

국가공무원 인사제도  
기초상식



**장관은  
1급 공무원  
인가요?**

국가공무원 인사제도  
기초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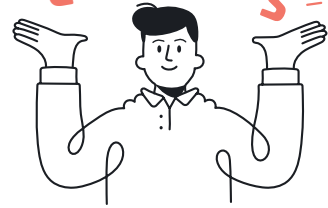
**장관은  
1급 공무원  
인가요?**

국가공무원 인사제도  
기초상식



**장관은  
1급 공무원  
인가요?**

# CONTENTS



<b>I</b> 들어가며	4
<b>I</b> 공무원 종류	6
<b>II</b> 채용·인재발굴	12
<b>III</b> 승진·보직관리	27
<b>IV</b> 인재개발·적극행정	54
<b>V</b> 성과·보수	68
<b>VI</b> 연금·복지	83
<b>VII</b> 복무·윤리	101
<b>VIII</b> 징계·소청	114
<b>IX</b> 공무원 노사협력	123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은 공무원이나 공직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일 거로 생각합니다. 그간 채용, 승진, 보수, 복무, 연금 등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해 궁금하지만 그 용어 등이 다소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진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 책은 공무원 인사제도 전반에 대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고 기초상식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인사혁신처에서 근무 중이신 9분의 청년인턴 분들과 평균연령 29.6세의 젊은 공무원으로 구성된 인사혁신처 주니어 보드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장관은 1급 공무원일까? 공무원은 휴가를 며칠 쓸 수 있을까? 7·9급 신규공무원은 얼마를 받을까? 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까? 등 그간 궁금해도 인터넷 검색 외에는 물어볼 데가 마땅치 않았던 기초적인 질문들에 대해 인사혁신처 각 제도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이 책을 읽고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인사혁신처 누리집 ([www.mpm.go.kr](http://www.mpm.go.kr))을 방문하시면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안내는 물론, 관련 법령과 인사통계 등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유튜브에서 ‘인사처TV’(@mpmkorea)를 검색·구독하시면 다양한 공무원들의 실제 삶과 공직사회의 트렌드를 보여주는 재미있는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직무 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하고,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인사제도와 인사혁신처의 정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정부조직법」 제22조의3에 따른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서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제도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 중앙 부·처·청 >

- 부(部) 19개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등)
- 처(處) 3개 (인사혁신처, 법제처 등)
- 청(廳) 19개 (국세청, 조달청, 경찰청 등)

인사혁신처는 채용, 승진, 복무, 윤리, 연금 등 공무원의 입직부터 퇴직까지의 인사제도를 총괄하며, 각 부처의 원활한 인사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수능 다음으로 가장 큰 국가 시험인 9급 공무원 시험을 비롯한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을 직접 주관 집행하고,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우수인재를 발굴하여 공직 후보자로 관리하는 한편, 대통령의 정무직공무원 인사도 보좌하고 있습니다.

# I

## 공무원 종류

### ★ 공무원 종류



장관은 1급 공무원인가요?  
외국인도 우리나라 공무원이  
될 수 있나요?

## 1 공무원 종류

**Q1** 각 부처 장관은 1급 공무원인가요?

**A** 아닙니다. 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이자 중요 정책결정권자로서, 1~9급으로 구분되는 일반적인 공무원이 아닌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합니다.

'정무직공무원'은 선거로 취임하거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의미하는데,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 등이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합니다.

'일반직공무원'은 각자의 직무상 역할과 책임에 따라 통상 고위공무원(과거 1~2급에 해당)과 3~9급 등으로 계급이 구분되고, 경찰·소방·군인·검사 등과 같이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은 그 업무와 조직의 특수성에 따라 일반직공무원과는 다른 계급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예시) 경찰공무원의 계급: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경사·경장·순경(11개 계급)

**Q2** 국가공무원(국가직)과 지방공무원(지방직)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A** 공무원은 소속된 기관, 담당하는 사무 등에 따라 크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구분됩니다.

국가공무원은 보통 중앙부처라 불리는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과 입법부인 국회, 사법부인 법원 등에서 근무하고, 국가에 의해 임명되며,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지방공무원은 시·도, 시·군·구, 읍·면·동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지방 사무를 담당하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참고로,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소방직 공무원의 경우 2020년 4월 1일부터 모두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Q3** 학교 선생님들은 모두 공무원인가요?

🗣️ 국·공립학교 소속인지, 사립학교 소속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의 소속기관인 국·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와 대학교수 등은 「교육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법인 또는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사와 대학교수 등은 「사립학교법」을 적용받아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립학교 소속 교사 및 대학교수 등도 그 자격요건 및 복무조건, 신분보장 및 징계사유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공립학교 소속 교사 및 대학교수 등과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Q4** 외국인도 우리나라 공무원이 될 수도 있나요?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공무원이 될 수 있지만,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 한하여 외국인도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공무원 채용절차 상 특이사항

1. 채용 공고 : 건강상의 문제 검토(경비 본인 부담), 해외 홈페이지 공고
2. 신원조사요의뢰 : 임용 30일전까지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 의뢰
3. 비자발급 : 특정 활동 중 정부 행정전문가(국가 및 지방공무) \* 체류기간 상한 3년
4. 보안대책 수립 : 소속기관장 책임하에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
5. 면직 관련 행정사항 : 공무원증, 의료보험증 반납 등

약 173명('22.12월 기준)의 외국인이 국가공무원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 고위직 외국인 공무원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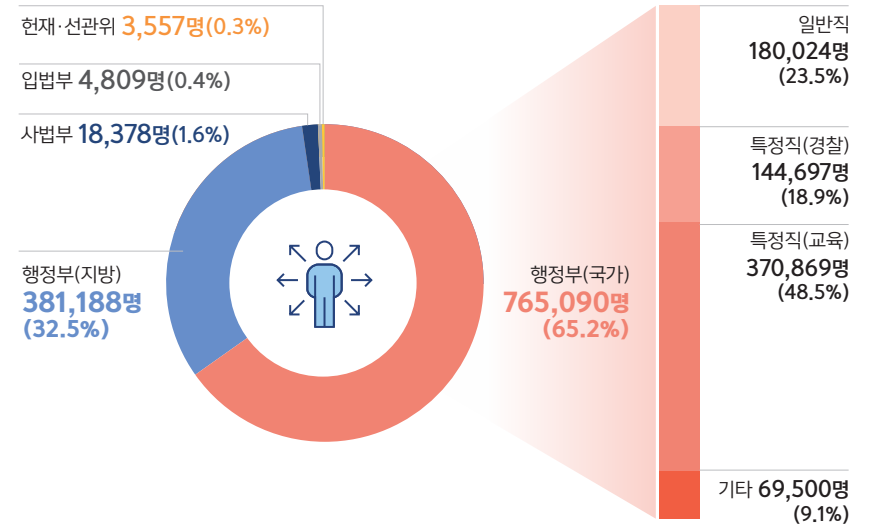
- Bartomeu Mari Ribas 국립현대미술관장('15~'18년 스페인 국적)
- Asaph Young Chun 통계개발원장('19~'22년 미국 국적)



제도 핵심내용

☑️ 전체 공무원 현원\*(총 1,173,022명)

\* '22.12.31. 기준



☑️ 국가공무원 종류

경력직 공무원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

특수경력직 공무원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보수·복무 등 일부 조항에 한정하여 국가공무원법 적용

국가공무원 인사제도 기초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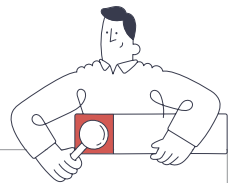
구분	내용	
경력직	일반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직군·직렬별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기술·관리운영직, 우정직, 연구·지도직, 전문직 등</li> </ul> </li> <li>특수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경력관(계급 구분 및 직군·직렬 분류 미적용)</li> </ul> </li> </ul>
	특정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신분보장·복무 등에서 개별법(법원조직법,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관, 검사, 경찰·소방·교육·외무공무원, 군인·군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경호공무원 등</li> </ul> </li> </ul>
특수 경력직	정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거 또는 국회 동의를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li> </ul>
	별정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서·비서관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서관·비서 및 정책보좌관, 국회 수석전문위원 등</li> </ul> </li> </ul>

구분	분류
교육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교장(원장), 교감(원감), 수석교사, 교사</li> <li>- 대학 : 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li> </ul> </li> <li>장학관, 장학사</li> <li>교육연구원, 교육연구사</li> </ul>
군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교 : 장관(원수, 대장, 중장, 소장, 준장), 영관(대령, 중령, 소령), 위관(대위, 중위, 소위)</li> <li>준사관 : 준위</li> <li>부사관 : 원사, 상사, 중사, 하사</li> </ul>
군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군무원 : 1 ~ 9급(9개 계급)</li> <li>전문군무경력관</li> </ul>
국가정보원 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정직 직원 : 1 ~ 9급(9개 계급)</li> </ul>
경호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호공무원 : 1 ~ 9급(9개 계급)</li> </ul>
헌법연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헌법연구관 - 헌법연구관보</li> </ul>



참고 | 특정직공무원의 종류

구분	분류
법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법원장-대법관-판사</li> </ul>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검찰총장-검사</li> </ul>
외무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위외무공무원(공사급 이상 직위)</li> <li>외무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교통상직렬, 외무영사직렬, 외교정보기술직렬로 구분</li> </ul> </li> </ul>
경찰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경사-경장-순경 (11개 계급)</li> </ul>
소방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방총감-소방정감-소방감-소방준감-소방정-소방령-소방경-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 (11개 계급)</li> </ul>



? 더 알고 싶다면?

📖 관련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 공무원임용령 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담당자 연락처 : 인사혁신기획과 044-201-8314

# II

## 채용·인재발굴

- ★ 신규채용
- ★ 통합인사
- ★ 인재발굴



### 2 신규채용

#### Q1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다가 공무원이 되는 방법은?

공무원이 되려면 공개경쟁채용시험(공채)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경채)에 응시하면 됩니다.

※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채용시험

구분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28조 등	
종류	5급 공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7·9급 공채	학위, 자격증, 경력 등 13가지 자격요건별 경채
시험실시기관	주로 인사처 실시	대부분 각 부처 장관 실시

민간기업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았다면 우선 이를 활용해 경채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경채는 특수 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학위, 자격증, 경력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지원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는 시험입니다.

※ 민간기업 경력자 공무원 채용 사례:

S그룹에서 10년간 인사업무를 담당하였던 OO씨는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응시·합격하여 현재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채용 업무를 담당하며 공익에 헌신 중  
물론, 학력·경력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5·7·9급 공채 시험에 응시할 수도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공채·경채시험의 선발 공고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 ([www.gosi.kr](http://www.gosi.kr))에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채용시험의 선발 공고는 나라일터 ([www.gojobs.go.kr](http://www.gojob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필기시험을 보지 않고도 공무원 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일부 경력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습니다.

필기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檢定)하기 위한 시험의 방법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경채) 시에도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격증이나 학위, 경력 요건 등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채의 경우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으로 적합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Q3** 영어·한국사 기준 점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 제1차 시험일 전날까지 기준 점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수험생 편의를 위해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일부 시험과목을 영어능력검정 시험이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응시자는 성적을 사전등록(사이버국가고시센터)하거나, 응시원서 제출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성적이 없어도 응시원서 접수는 가능하나, 추가등록기간에 '원서접수 이후, 제1차시험일 전날'까지 발표되는 성적을 반드시 추가등록해야 합니다.

※ 과목을 대체하는 검정시험의 종류:

1. 영어과목 대체 : 토플(TOEFL), 토익(TOEIC), 텡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2. 한국사과목 대체: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Q4** 기업의 경우 인재상이 있는데 공무원 인재상도 있나요?

🗣️ 공직에도 공무원 인재상이 존재하며,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4개 요소로 구성됩니다.

탁월한 직무 전문성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공무원 인재상

- 소통 공감 : 국민중심, 소통하고 공감하며 배려하는 공무원
- 헌신 열정 : 적극적으로 국가에 헌신하는 열정적인 공무원
- 창의 혁신 : 창의적 사고로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을 이끄는 공무원
- 윤리 책임 : 윤리의식을 갖추고 청렴하며 책임있게 일하는 공무원

인사혁신처는 '23년 1월 공직자의 바람직한 사고(thinking)와 태도(attitude)의 기준으로서 공무원 인재상을 정립·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직 내 인재상과 민간·외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공무원·국민 약 2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정부 주도로 공무원 인재상을 정립한 것은 최초입니다.

### Q5 공무원 채용은 정말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나요?

**공무원 채용시험은 법과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되며, 모든 응시자는 공정한 환경 속에서 응시 기회가 보장됩니다.**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은 외부와 격리된 별도의 시설(국가고시센터)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논의와 검토를 통해 이뤄집니다. 또한, 면접시험은 시험위원의 자의와 선입견을 배제하고, 응시자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구조화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아울러 합격 발표 전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점검위원회가 채용시험의 모든 과정이 공정하게 시행되었는지를 점검합니다.

※ 국가고시센터 운영 개요

- 매년 17종 시험의 350여 개 과목·5,000개 가량의 문제 출제
- 시험별 2주 내외 합숙(CCTV 상시 녹화, 보안요원 상주, 외부 차단 등)
- 연간 3,000여 명의 출제위원 입소

인사혁신처는 공공부문 전반에 공정채용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역량과 전문성을 다른 기관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정 채용 컨설팅을 진행하는 한편, 지방공무원 채용 시험문제도 수탁 출제합니다.



### 제도 핵심내용

#### ☑️ 공무원 채용시험의 종류

##### 1. 공개경쟁채용시험

- 학력·경력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공개경쟁을 통해 상대적 우수자를 선발하는 시험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에서 정한 공무원 응시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한 응시연령에 부합하여야 함
-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응시자격, 선발예정직렬(류) 및 인원, 시험방법 등 포함)은 매년 1월 초 공고

##### 2. 경력경쟁채용시험

-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충원하기 곤란한 특수 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요건(학위, 자격증, 경력 등)을 갖춘 지원자를 대상으로 경쟁을 통해 상대적 우수자를 선발하는 시험
-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요건 및 시험방법 등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16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29조 등에 규정
  -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일부 시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각 부처별로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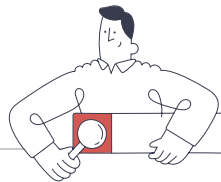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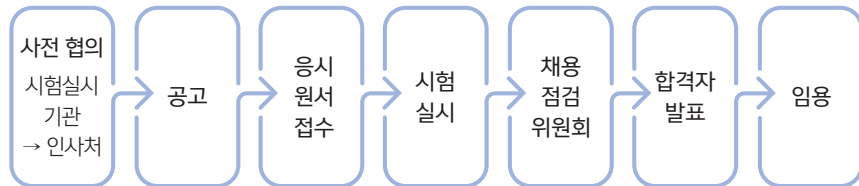
✓ 신규채용 절차

1. 공개경쟁채용시험



※ 7·9급의 경우, '임용추천·배치' 후 '교육 및 실무수습' 실시

2. 경력경쟁채용시험



? 더 알고 싶다면?

▶ 관련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 관련 웹주소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 담당자 연락처 : 인재정책과 044-201-8215

3 통합인사

Q1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특정 성별에게 유리한 할당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직의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시행하는 양성평등채용 목표제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5·7·9급 공채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중 선발예정 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단, 교정·보호직렬 및 성별구분모집직렬은 제외)에 적용됩니다.

시험실시단계별로 한 성(性)의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의 3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일정 합격선 내(5급 -2점, 6급 이하 -3점)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소수 성(性)을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남녀 모두 추가 합격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성별 합격자 몫을 사전에 정하여 채용하는 성별 할당제와도 성격이 다른 제도입니다.

Q2 장애인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채용시험이 따로 있나요?

장애인 공무원 임용 촉진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장애인 구분모집과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을 장애인만 응시 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장애인 구분모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증장애인보다 고용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를 위하여 응시 자격을 중증장애인으로 제한하는 경력경쟁채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정부는 이러한 장애인 채용제도 등을 통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3.6%, '22~'23년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2022년 중앙부처 장애인 고용률 3.66%

**Q3** 공무원 채용 관련해 '지역인재'와 '지방인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무엇보다도 먼저 채용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단위 학교 인재를,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도」는 서울을 제외한 지방 소재 학교 인재를 채용대상으로 합니다.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는 학업성적이 뛰어난 고등학교 이상 졸업(예정)자를 학교로부터 추천받아 수습직원으로 선발하고, 일정기간 수습근무를 거쳐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제도로서, 동 제도상의 '지역인재'란 서울을 포함하여 전국 단위의 고등학교 이상 졸업(예정)자를 의미합니다.

한편,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5·7급 공채시험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서 서울을 제외한 지방 소재의 학교 출신\* 합격자가 목표비율(5급·외교관후보자 20%·7급 30%)에 미달 시, 일정 합격선 내에서 선발예정인원 외에 추가로 선발하는 제도로서, 동 제도상의 '지방인재'에는 서울 소재 학교 최종 졸업(예정)자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서울 제외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최종 졸업(예정)·중퇴, 재학·휴학 중인 사람

**Q4** 저소득층 구분모집을 통해 입직한 공무원인지 제3자가 알 수 있나요?

 저소득층 구분모집 채용제도에 의한 입직자인지 여부를 동료직원 등 제3자는 알 수 없습니다.

저소득층 구분모집 제도는 저소득층 공직 진출 및 자립 지원 등을 위해 9급 공개 경쟁채용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 이상을 저소득층만이 응시하도록 하는 공무원 채용제도입니다.

공무원으로 채용되면 능력과 성과에 따라 전보·교육·승진 등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며, 저소득층 구분모집 제도를 통해 입직하였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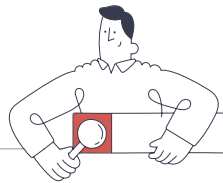


**제도 핵심내용**

**통합인사제도**

구 분		주요내용	적용시험/대상
양성 평등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 한 성(性)의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일정 합격선 내(5급 -2점, 6급 이하 -3점)에서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	5·7·9급 공채, 외교관후보자 선발
	구분모집제	•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규모*를 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선발하는 제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의무고용률 이상	7·9급 공채
장 애 인	중증장애인 경력경쟁 채용	• 응시자격을 중증장애인*에 한정하여 일정한 자격(경력, 학위, 자격증)을 갖춘 경우, 필기시험 없이 서류·면접시험만으로 선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5급 이하 채용
	장애인 공무원 근무 지원사업	•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을 지원하는 사업	장애인 공무원
지역· 지방 인재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 (지역인재 7급) 대학 추천과 필기·면접시험으로 수습직원을 선발하고, 1년간 수습근무 후 7급 공무원으로 임용 • (지역인재 9급) 특성화고·마이스터고·전문대 추천과 필기·면접시험으로 수습직원을 선발하고, 6개월간 수습근무 후 9급 공무원으로 임용	7급 채용  9급 채용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 지방인재*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5급 20%, 7급 30%)에 미달하는 경우, 일정 합격선 내(1차시험 -3점, 2차시험 -2점)에서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 *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중인 자	5·7급 공채
저소 득 층	구분모집제	• 9급 공채 선발예정인원의 2% 이상, 9급 경채 부처별 연간 신규채용인원의 1% 이상을 저소득층*만 응시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선발하는 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9급 공채·경채

**? 더 알고 싶다면?**



**📖 관련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임용의 원칙), 제26조의4(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3(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시험실시의 원칙), 제20조(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제20조의2(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제20조의3(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 제20조의4(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채용시험 등), 제20조의5(장애인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 균형인사지침

**📞 담당자 연락처** : 통합인사정책과 044-201-8505

**4 인재발굴**

**Q1**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가 뭔가요?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대한민국 정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추천하기 위해 객관적 인물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인물정보시스템입니다.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www.hrdb.go.kr)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는 학계, 경제계, 법조계 및 분야별 전문가자격증 소지자 등 약 36만명의 사회 각 분야 인재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수록된 인재들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직위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 국가인재DB를 구축한 1999년부터 현재('23.6월)까지 각급 기관이 요청한 13만여 개 직위에 대해 국가인재DB를 통해 48만여 명의 후보자 추천

**Q2** 공직자나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면 공직자나 공무원이 되는 건가요?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다고 하여 바로 공직자나 공무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사람은 국가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인사수요에 따라 개방형 직위, 행정기관위원회 위원, 공공기관 임원 및 각급기관 채용시험 위원 등에 추천될 수 있으며 추천한 정보는 각급기관에서 필요에 따라 활용합니다.

※ 중앙부처의 공모 직위 선발 시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의무적으로 시험위원의 1/2 이상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추천

**Q3** 인물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관리하나요?  
개인정보 침해나 유출의 우려는 없나요?

🗣️ **공직후보자 정보는 본인에게 직접 제공 받거나 공개된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공직후보자 본인에게 수집할 때는 정보 제공 동의를 받고 있으며, 공공 기록물·출판물·인터넷 및 언론보도 등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구입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도 수집합니다.

공직후보자 정보는 유출·분실·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보안조치가 되어 있으며, 허가받은 사람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하여 보다 엄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Q4** 우리 부처에 민간의 전문성이 꼭 필요한 직위가 있습니다.  
해당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모시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 **인사혁신처에 정부헤드헌팅 제도 활용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정부헤드헌팅이란 공직 개방성과 전문성 확대를 위해 인사혁신처에서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 등을 바탕으로 각 기관에서 요청하는 직위에 적합한 민간 우수 인재들을 직접 접촉·발굴하여 선발시험에 응시하도록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15년부터 정부헤드헌팅을 통해 현재까지 총 108명('23.6월 기준)이 임용되었습니다.

※ 정부헤드헌팅 사례 :

코로나19 확산 등을 계기로 원격교육 중심의 교육운영 체계 전환을 이끌어갈 우정사업본부 우정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 직위에 멀티캠퍼스 이사를 역임한 원격교육 전문가를 발굴·임용('21.2월)



**제도 핵심내용**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

- (활용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활용범위) 인사상 목적 또는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기술·경험 등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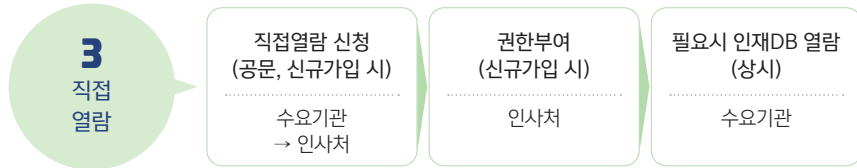
구분	인사처 추천·직접검색(DB열람)	직접열람
활용 직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무직, 개방형·공모 직위, 책임운영기관장 인선 시</li> <li>행정기관위원회·자치단체위원회 위원 위촉 시</li> <li>개방형·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시</li> <li>각종 채용·승진 등의 시험위원 위촉 시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기관 임원, 개방형계약직 인선 시</li> <li>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위촉 시</li> <li>공공기관 채용·승진 등의 시험위원 위촉 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직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기술·경험 등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정책 자문, 포럼·세미나 발제·패널 섭외 등)</li> </ul>
열람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명·성별·나이·이메일·전화번호·학력·경력·전문분야·저술·업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명·성별·나이·이메일·주요경력·전문 분야</li> </ul>

○ (활용방법) 인사처 추천, 직접검색(DB열람), 직접열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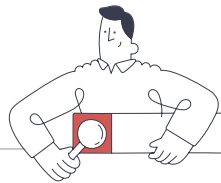


\* 직접검색 서비스 제공기관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국가공무원 인사제도 기초상식



※ 신규 가입 이후에는 별도의 신청·승인 절차 없이 인재DB 열람 가능  
 \* 직접열람 서비스 제공기관 : 국가기관, 지자체



? 더 알고 싶다면?

📖 관련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 관련 웹주소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www.hrdb.go.kr)

📞 담당자 연락처 : 인재정보담당관실 044-201-8064

# III

## 승진·보직관리

- ★ 승진, 전보
- ★ 휴직, 면직
- ★ 인사교류, 파견
- ★ 개방형·공모 직위
- ★ 고위공무원단
- ★ 특수제도 및 인사특례

공무원은 보통 한 자리에서  
 얼마나 근무해야 하나요?  
 공무원 정년은 모두 동일하게  
 60세인가요?



**5 승진, 전보**

**Q1** 공무원은 어떻게 승진하나요?

일반적으로 승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무기간\*을 채운 사람들 중 일정 배수 범위의 인원을 정하고, 직무수행능력 등 적격성을 평가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승진소요최저연수 : 승진을 위해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하는 기간

계급	9급	8급 및 7급	6급	5급	4급
소요연수	1년6개월	2년	3년6개월	4년	3년

이러한 '일반승진' 외에도,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승진시키는 '특별승진', 일정한 근속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근속승진'이 있습니다.

**Q2** 특별승진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실제 사례가 있나요?

▲ 직무수행능력 우수자, ▲ 인사처장이 정하는 포상 수상자 ▲ 제안채택·시행자(창안등급 동상 이상) ▲ 명예퇴직자 중 특별공적자 ▲ 공무로 사망한 자 중 특별공적자 등의 사유로 가능합니다.

특별승진은 탁월한 공적이거나 직무수행능력을 갖춘 사람을 빠르게 승진시켜 공직 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단, 특별승진의 경우에도 징계처분 기간 중에 있는 등 승진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인사혁신처 특별승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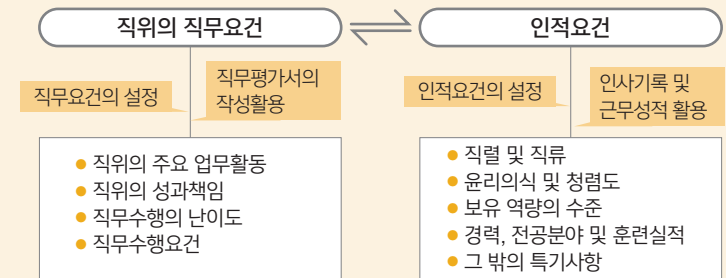
- 사무관 A는 공무 수행으로 제소당하는 공무원들이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한편 향후 업무 시 위축되는 문제를 발견하고, 현장 방문 및 관계부처 회의, 법적 징점 검토, 제도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공무원 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공로로 특별승진함
- 사무관 B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2020년도 7·9급 필기·면접시험을 안전하게 시행하는 등의 공로로 특별승진함

**Q3** 공무원의 담당업무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기관장은 특정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질 등(직무요건)과 개인의 역량 등(인적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합니다.

또한 담당업무를 정할 때에는 공무원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 발전에 맞도록 하며, 성별, 장애 유무로 인한 차별은 금지됩니다.

\* 적재적소 배치를 위한 고려사항



**Q4** 공무원은 보통 한 자리에서 얼마나 근무해야 하나요?

행정능률과 업무 전문성 함양을 위해 현재 맡은 자리에서 3년 이상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기간을 '필수보직기간'이라 합니다. 일반직 4·5급 이하 기준 3년이 원칙이나, 기관장이 주요 국정과제나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 또는 임용예정 직위에 관한 전문역량 확보 등을 위해 전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다른 직위에 갈 수 있습니다.

필수보직기간은 임용 형태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도 있는데, 지역·기관 구분 공채자는 최초 임용 후 5년, 경채자는 최초 임용 후 4~5년이 지나야 전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필수보직기간 내에 전보 가능합니다.



제도 핵심내용

☑ 승진제도

1. 일반승진

- 직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고, 승진임용 제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심사 또는 시험을 거쳐 승진 가능

2. 특별승진

- 직무수행능력 우수자 등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등에 관계없이 승진임용  
\* 단, 승진임용 제한 사유(징계, 직위해제, 휴직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유형	대상 계급	근무기간 요건
1. 직무수행능력 우수자	4급 이하	없음('15.11월~)
2. '대한민국공무원상', '적극행정우수공무원' 수상자	4급 이하	
3. 제안의 채택·시행자(창안등급 동상 이상)	5급 이하	승진소요최저연수 도달
4. 명예퇴직자 중 특별한 공적을 인정받은 자	3급 이하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
5. 공무로 사망한 자 중 특별한 공적을 인정받은 자	全 계급	없음

3. 근속승진

- 승진체계가 심한 하위직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도입,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근속승진기간\*을 경과한 공무원을 승진임용  
\* 9급→8급 : 5년 6개월 / 8급→7급 : 7년 / 7급→6급 : 11년 (6급 근속승진의 경우 근속승진후보자의 40%내에서 가능)  
※ 승진심사위원회 심사, 배수 범위 적용 등 일반원칙은 동일하게 적용

☑ 보직관리

1. 원칙

-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이나 직위에 임용해야 함
- 직위의 직무요건\*과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 적재적소에 임용  
\* 직위의 주요 업무활동, 직위의 성과책임, 직무수행의 난이도, 직무수행요건  
\*\* 직렬·직류, 윤리의식·청렴도, 보유 역량의 수준, 경력, 전공분야 및 훈련실적 등
-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른 직위의 등급화와 소속 공무원의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발전에 맞도록 보직함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보직관리 시 성별, 장애 유무 등을 이유로 소속 공무원을 차별해서는 안됨
- 인사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거주지역을 고려하여 보직

2. 전보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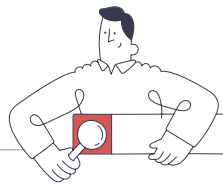
- (정기전보 원칙) 담당 직무에 대하여 전문성과 능력을 높이고 창의적·안정적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실시
- (필수보직기간) 임용령 제45조

구분	적용 대상	원칙	예외 (유사직무 수행 직위로 전보)		임용령 §45
일반 기준	• 일반(4·5급 이하) ※ 실장·국장·과장급(3·4급) : 2년	3년	2년	실·국·소속기관 내 유사직위 전보	제1항, 제2항
			2년	기획·지원 등 공통부서 근무자의 전보	
			1년	부처 내 타기관·타지역 유사직위 전보	
	지역·기관구분 공채자 최초전보		타기관·타지역 5년		제9항

국가공무원 인사제도 기초상식

구분	적용 대상	원칙	임용령 §45	
경채자 최초 전보	(6호) 특수직무·환경, 도서·벽지근무 (8호) 외국어능통자 (12호) 한지채용	5년	제1호	
	(2호) 자격증 (3호) 근무·연구경력자 (9호) 전문계·사학계 등 졸업자 (10호) 학위	4년 * 중증장애인 경채자의 경우, 건강 등 사유에 따라 2년	제2호	
	(13호) 귀화자· 북한이탈주민	2호·3호·10호 요건자	4년	제3호
		특수근무 채용	5년	제4호
* 직무가 동일하거나 유사성이 높은 직위 간 전보는 필수보직기간 2년 적용 가능(제7항)				

※ 단, 기구 개편, 가족과의 거주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전보 가능(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3항 등)



**더 알고 싶다면?**

**관련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국가공무원법 제40조(승진), 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 제40조의3(승진 심사), 제40조의4(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 공무원임용령 제4장 및 제6장
- 공무원 임용규칙 제2장 및 제6장

**담당자 연락처** : 인사혁신기획과 044-201-8295

**6 휴직, 면직**

**Q1 공무원 휴직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Q1** 국가공무원의 휴직제도는 직권휴직(5종)\*과 청원휴직(7종)\*\*으로 구분됩니다.

\* 직권휴직 : 질병휴직, 병역휴직, 행방불명휴직, 법정의무수행휴직, 노조전임휴직  
 \*\* 청원휴직 :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해외동반휴직, 자기개발휴직

직권휴직은 휴직사유에 해당하면 임용권자가 휴직을 부여해야 하며, 청원휴직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임용권자가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청원휴직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않으나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게 되며, 휴직기간이 종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복직하여야 하고 휴직기간 중에는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은 불가합니다.

**Q2 육아휴직은 어떤 경우 쓸 수 있나요?**

**Q2**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만 9세가 되기 1일 전까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3학년 시작전일까지)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령·학년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며, 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에도 해당 요건은 충족되어야 함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3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수당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만 지급됩니다.

참고로, 최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공직 분위기 변화로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남성 육아휴직 비율(교육공무원 제외)  
 ('18) 29.0% → ('19) 33.9% → ('20) 39.0% → ('21) 41.5% → ('22) 46.0%

**Q3**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고 당하는 경우도 있나요?

☎ **공무원도 법률로 정해진 퇴직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면직될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이 선고·확정되거나 정년에 도달하는 등 법률에서 정하는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공무원은 별도 처분 없이도 당연히 퇴직하게 됩니다.

또한, 휴직기간 만료 후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면허의 최소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직권면직될 수 있으며,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그 위반정도에 따라 파면·해임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공무원 정년은 모두 동일하게 60세인가요?

☎ **공무원의 정년은 공무원의 종류와 담당직무 등에 따라 다릅니다.**

행정일반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정년이 60세이지만, 교사 등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이며, 그 중에서도 대학총장·교수 등은 65세의 정년을 적용 받습니다.

아울러, 경찰·소방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일정 계급 이상은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해 계급정년도 함께 적용받는데, 예를 들어 경찰공무원 중 경정(5급상당)의 경우 연령정년 외 14년의 계급정년이 따로 있어 경정이 된 후 14년 내 총경(4급상당)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60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계급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하게 됩니다.



**제도 핵심내용**

☑ **휴직**

**1. 직권휴직**

종류	국공법	요건	기간
질병휴직	§71① 1호	•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1년 이내 (1년 이내 연장 가능) * 공무상 질병휴직 3년 (2년 범위 연장 가능)
병역휴직	§71① 3호	•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소집 되었을 때	복무기간
행방불명	§71① 4호	• 천재, 지변 또는 전시, 사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한 때	3월이내
법정의무수행	§71① 5호	• 기타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복무기간
노동조합전임자	§71① 6호	•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 관한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전임기간

**2. 청원휴직**

종류	국공법	요건	기간
고용휴직	§71② 1호	•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특정 민간 기업 등에 임시로 채용될 때	채용기간 (민간근무휴직 3년 이내)
유학휴직	§71② 2호	•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3년 이내 (2년 이내 연장 가능)

☛ 국가공무원 인사제도 기초상식

종류	국공법	요건	기간
연수휴직	§71② 3호	•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 하는 연구,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2년 이내
육아휴직	§71② 4호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출산 하게 된 때	자녀 1명당 3년 이내
가족돌봄 휴직	§71② 5호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년 이내 (총 3년)
해외동반 휴직	§71② 6호	•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3년 이내 (2년 이내 연장 가능)
자기개발 휴직	§71② 7호	• 일정기간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 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1년 이내

구분	주요 내용
의원면직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요)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공무원 관계 소멸</li> <li>• (절차) 공무원이 자필 사직원 제출 → 임용권자 등은 징계사유 및 기소·수사 여부 등 퇴직제한 사유 확인 → 퇴직제한 사유 확인 시 퇴직처리 제한(징계 의결 요구), 퇴직제한 사유 없을 시 퇴직 처리</li> </ul>
직권면직 (국가공무원법 제7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요)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면직처분</li> <li>* △폐직·과원, △휴직기간 종료 후 미복귀 또는 직무감당 불가, △직위해제자의 능력 향상 기대 곤란, △직무수행 시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상실·면허취소 등, △고위공무원단의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판정 등</li> <li>• (절차) 사유 발생 → 징계위원회(동의 또는 의견청취) → 직권면직</li> </ul>
징계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요) 파면·해임 시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 각 5년·3년간 임용 제한</li> <li>• (절차) 비위사실 적발 → 징계 의결요구 →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 징계 처분 → 파면·해임 시 공무원 관계 소멸</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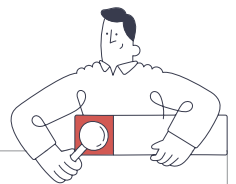
☑ 면직

○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금지

- 형의 선고, 징계처분, 법정사유 이외에 의사에 반하는 면직 금지
- ※ 1급공무원과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위치에 임용된 고위공무원은 제외

○ 면직의 종류

구분	주요 내용
당연퇴직 (국가공무원법 제6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해당, 사망,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 도달, 임기제공무원 임기 만료 등의 경우 당연히 퇴직</li> <li>* △파산선고, △금고 이상의 형, △자격 상실 또는 정지, △직무 관련 횡령·배임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 △성범죄·음란물배포·스토킹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 또는 형·치료감호 확정 등</li> <li>• (절차) 법률상 사유 발생 시 당연히 퇴직(당연퇴직 인사발령은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 별도 처분 아님)</li> </ul>



❓ 더 알고 싶다면?

📖 관련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제69조(당연퇴직), 제70조(직권 면직), 제71조(휴직), 제72조(휴직 기간), 제73조(휴직의 효력), 제74조(정년), 제78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 공무원임용령 제7장, 공무원 임용규칙 제7장

📞 담당자 연락처 : 인사혁신기획과 044-201-8314

## 7 인사교류, 파견

### Q1 인사교류와 파견은 어떻게 다른가요?

🗣️ 인사교류와 파견은 소속기관을 달리하여 근무하는 점은 동일하나, 인사교류가 1:1 상호 교차방식으로 근무하는 쌍방향의 개념이라면, 파견은 일방으로 타 기관에 가서 근무하는 방식입니다.

인사교류는 공공부문 내 전문성 상호활용과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효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거나(계획인사교류), 공무원 개인의 맞벌이·육아·부모봉양 등 고충의 적극적 해소와 역량개발 등을 위해 근무지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수시인사교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와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그 밖의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국내외의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할 수 있습니다.

※ 인사교류 및 파견 사례

- (인사교류)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계획인사교류를 통해 연안지역 환경영향평가(환경부)와 해양수질 공정시험기준안을 마련(해수부)하는 등 해양과 환경 전문성을 상호보완
- (파견) 코로나19 관련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외 법무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질병관리청, 소방청 등 관련부처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근무

### Q2 인사교류 및 파견 시 받는 보수는 이전(가기 전)과 동일한가요?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본급은 동일하나, 수당 및 근무지가 달라짐에 따라 발생하는 경비 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합니다.

파견과 계획인사교류 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며, 근무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택보조비, 주거지원비 등 소요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외파견의 경우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수당이 지급됩니다.

### Q3 파견은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갈 수 있는 건가요?

🗣️ 파견목적 및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목적	기간	파견대상기관
1호	국가기관외의 기관·단체에서의 국가적 사업 시행	2년 이내 (총 파견기간 5년 이내 연장 가능)	지방자치단체 올림픽조직위
2호	타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	"	국가기관
3호	소관불명 또는 관련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특수 업무의 공동수행	"	국가기관
4호	교육훈련	필요한 기간	교육훈련기관
5호	교수요원	1년 이내(필요시 1년 연장 가능)	교육훈련기관
6호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연구기관에서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	필요한 기간	국제기구, 외국 정부·연구기관
7호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단체에서 관련 업무수행·능력개발이나 국가정책 수립 관련 자료 수집	2년 이내 (총 파견기간 5년 이내 연장 가능)	국내 연구기관, 민간기관·단체 정부투자기관

※ 교육훈련 파견의 경우,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 별도 규정에 따라 진행



제도 핵심내용

인사교류

구분	계획인사교류	수시인사교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 및 효율적 활용, 국가정책수립과 집행의 연계성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맞벌이, 육아, 부모봉양 등 공무원 고충해소</li> </ul>
대상 직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국장급(고위공무원), 과장급(3~4급), 실무자급(4~9급) 및 민간전문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부 및 지자체 4~9급 일반직 공무원</li> </ul>
기관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 ↔ 중앙, 중앙 ↔ 지방, 중앙 ↔ 공공(연구)기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 ↔ 중앙, 중앙 ↔ 지방, 지방 ↔ 지방</li> </ul>
선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무연관성, 상호 협조 필요성이 큰 직위</li> <li>국정과제 및 현안 추진, 기관 간 소통과 협력, 전문성 상호 활용, 조직 활력제고 등 교류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직위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일 직렬·계급의 나라일터 신청자 중 희망부처, 지역 등 조건이 매칭된 자</li> </ul>
교류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호 파견형식, 필요시 전출입 가능</li> <li>교류기간 1년단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근무 후 원소속 복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 또는 다자간 상호 맞교환</li> <li>부처 간 전보, 국가-지방 간 경력 채용</li> </ul>
제한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li> <li>전출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li> <li>일반승진시험 요구 중에 있는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령상 전보제한 대상자</li> <li>시보임용 중인 자</li> <li>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자</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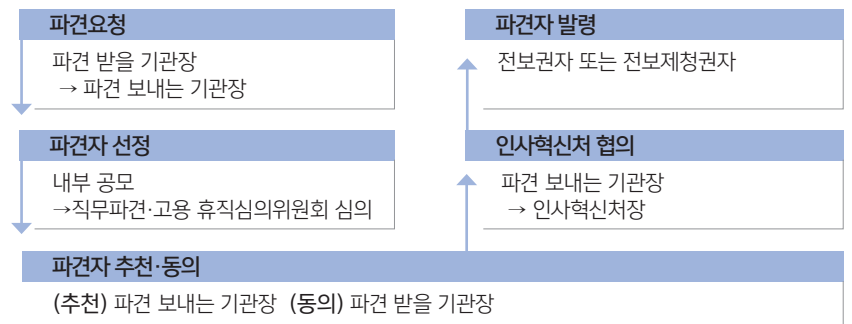
파견

1. 파견 개념

- 한시적 국가적 사업의 효율적 수행 또는 그 업무와 관련된 행정지원, 국내외 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 등에서 능력개발을 위하여 파견

2. 파견 절차

- 파견 받을 기관과 파견 보내는 기관이 파견직위 신설, 파견자 추천 및 동의 등 파견 관련 제반사항을 사전 협의
- 협의가 완료되면 파견 보내는 기관에서 인사혁신처와 파견 필요성·적정성 등을 협의한 후 파견발령 진행



※ 국내파견의 경우 직무파견·고용휴직심의위원회 생략 가능

3. 파견자의 복무 (공무원복무규정 제7조, 공무원임용규칙 제34조)

-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되, 파견 받은 기관의 복무 관련 규정(지침)을 준수하여야 하고, 파견 받은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원 소속기관의 장에 그 사실을 통보 → 원 소속기관의 장이 징계처분
- 파견기간 중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파견 공무원 복귀 또는 교체
- 파견 받은 기관장은 파견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부여·지정하고, 파견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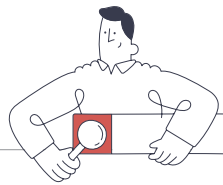
국가공무원 인사제도 기초상식

4. 파견자의 보수지급 (공무원보수규정 제21조)

- 법령의 규정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원 소속기관에서 파견기간 중의 보수 지급
-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원 소속기관과 파견 받을 기관이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 그에 따름

5. 파견에 따른 소요경비 등 지급

- 국내 파견에 따른 주택보조비, 주거지원비 등 경비가 소요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 지급 (공무원임용규칙 제43조의3)
- 국외 파견의 경우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수당 지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더 알고 싶다면?

관련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인사교류), 제32조의4(파견근무)
- 공무원임용령 제41조(파견근무), 제48조(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관련 웹주소

나라일터(www.gojobs.go.kr)

담당자 연락처

: 개방교류과 044-201-8354(인사교류)  
심사임용과 044-201-8340(파견)

8 개방형·공모 직위

Q1 개방형 직위와 공모 직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적격자를 선발하는 목적과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개방형 직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의료 분야 등 고도의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공직 내·외부의 상호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선발하는 반면, 공모 직위는 부처간 협력이 필요하거나 인적교류를 통해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기관 내·외부의 공무원 간의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합니다.

개방형 직위 제도와 공모 직위 제도는 조직 내·외부에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며, 조직 전반에 능력과 성과 중심의 문화를 확산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개방형·공모 직위 사례

- (개방형 직위)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 신속·정확한 법의학적 검안 및 감정, 조사를 위해 법의학 분야 민간 전문가를 영입
- (공모 직위)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백신연구개발총괄과장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바이오의약품 관련 연구업무를 수행한 연구관 영입

Q2 개방형 직위로 공무원이 되면 일정기간 근무 후 퇴직하나요? 아니면 정년까지 보장되나요?

탁월한 성과를 낸다면 공직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민간인이 개방형 직위에 선발되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때문에 최소 2년의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총 5년의 범위에서 임기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과가 탁월하다면 계속 임기가 연장될 수도 있고, 상위직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채용될 수도 있으며,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 일반직 전환 사례 : 보건복지부 국립장기혈액관리원 혈액안전감시과장  
(’14년 임용되어 임기를 연장하여 근무하다가, ’23년 일반직으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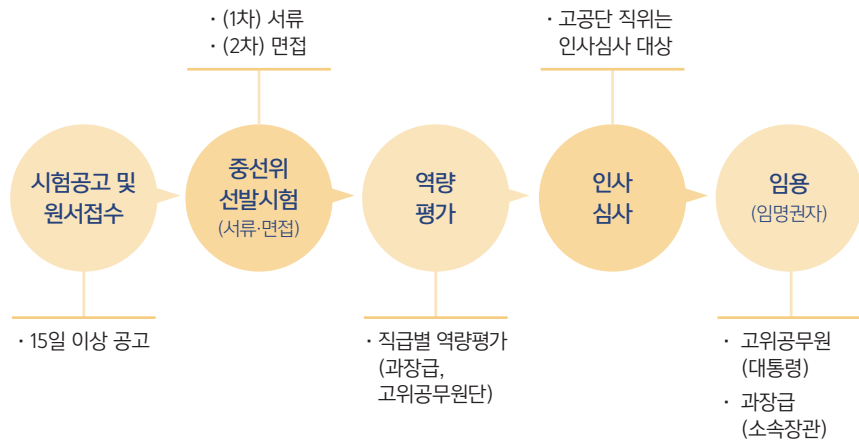


제도 핵심내용

☑ 개방형 직위 제도

- (직위지정) 고위공무원단 직위와 과장급 직위 총수의 20% 내 지정
- (선발절차) 소속장관·인사혁신처장이 공개모집,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선발시험을 진행하여 3명 이내의 임용후보자 추천, 소속장관 최종 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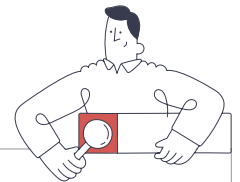
개방형 직위 선발 절차



- (임용방법)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으로 개방형 직위에 임용
  - 민간인이 임용되는 경우 등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이 원칙이나,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인 사람은 전보, 승진, 전직의 방법으로 임용
- (임용기간) 최소 2년 이상 임용, 총 5년 범위에서 임기연장
  - 민간인의 경우 성과가 탁월하면 5년 초과 임기연장·상위직급 재채용 가능

☑ 공모 직위 제도

- (직위지정)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30%, 과장급 직위 총수의 20% 내 지정
  - ※ 담당급(무보직4급 및 5급) 직위로 확대('23.1.3. 공포, '23.4.4. 시행)
- (선발절차) 소속 장관이 공개모집,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에서 3명 이내의 임용후보자 추천, 소속장관 최종 선발
- (임용방법) 전보·승진·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등(외무→일반직, 지방→국가)의 방법으로 공모 직위에 임용
- (임용관리) 2년간 다른 직위로의 임용제한




? 더 알고 싶다면?

- 📖 관련 법령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
- 🌐 관련 웹주소
  - 나라일터(www.gojobs.go.kr)
- 📞 담당자 연락처 : 개방교류과 044-201-8351

## 9 고위공무원단

### Q1 고위공무원이란 무엇이고, 몇 명이나 되나요?

 **고위공무원이란 정부 주요정책의 결정 및 관리에 있어 핵심역할을 하는 중앙부처 실·국장급 공무원을 말합니다.**


정부 내 고위공무원은 약 1,600여 명('23년 6월말 기준)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인사관리되고 있습니다.

고위공무원의 임용은 역량평가, 채용·승진심사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며, 보수는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의 중요도(직무등급)와 성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고위공무원의 기본연봉('23년 기준)

- 가등급 : 최소 83,427천원 ~ 최대 122,416천원(격차 38,989천원)
- 나등급 : 최소 77,427천원 ~ 최대 116,416천원(격차 38,989천원)

### Q2 7·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고위공무원이 된 사례가 있나요?

 **물론 있습니다.**

능력과 성과가 있는 공무원이라면 입직경로의 제한없이 누구나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할 수 있으며, 7·9급 공채를 통해 입직하여 고위공무원이 된 사례는 다수 있습니다.



## 제도 핵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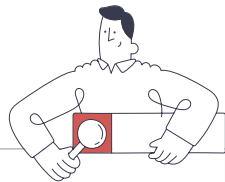
### ☑ 도입 취지

- **(배경)** 성과책임을 강화하여 역량 있는 정부를 구현
  -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및 관리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실·국장급 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개방과 경쟁을 확대
- **(연혁)**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
  - 미국은 1978년 공무원개혁법에 의해 도입하였으며, 그 외 영국, 호주, 캐나다 등 OECD 정부혁신 선도국가들도 도입

### ☑ 주요 내용

- **(직무중심)** 신분(계급)보다 직무 중심의 인사
  - 과거 1~3급의 계급을 폐지하고 직무와 직위에 따라 인사를 관리하며, 계급과 연공서열보다는 직무의 중요도·난이도 및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
- **(개방·경쟁)** 고위직 개방의 확대 및 경쟁 촉진
  - 민간과 경쟁하는 개방형 직위제도 및 각 부처의 공무원들이 경쟁하는 공모직위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 **(역량평가)** 고위공무원의 자격요건 강화
  -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채용을 위한 요건으로 고위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측정할 수 있는 역량평가 실시
- **(성과중심)** 체계적인 성과관리 및 능력개발 강화
  - 성과목표·평가기준 등을 상급자와 협의하여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목표달성도 등을 평가하는 성과계약 등 평가제도를 운영
- **(적격심사)** 고위공무원의 책임성 제고
  - 성과와 능력이 현저하게 미달하는 고위공무원은 적격심사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거쳐 엄정하게 인사조치

**? 더 알고 싶다면?**



**관련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 제28조의4(개방형 직위), 제28조의5(공모 직위), 제70조의2(적격심사)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

**담당자 연락처** : 심사임용과 044-201-8327

**10 특수제도 및 인사특례**

**Q1** 공무원 중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 있는지, 있다면 단기간 근무하는 공무원을 두는 이유는?

**A1**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이 있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은 의사, 변호사 등 전문 지식 및 최신 기술 활용이 필요한 공직 분야에서의 전문성 향상 도모, 조사위원회 등과 같은 일시적인 국가사업의 수행, 육아휴직자 업무 대행 등을 목적으로 임용하는 공무원으로 획일화된 공직의 임용 형태에서 벗어나 점차 복잡해지고 전문화되어가는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도입한 공무원 제도입니다.

임기제공무원은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며, 해당 사업이 계속되는 등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 5년의 범위에서(업무성고가 탁월한 경우, 5년 추가 가능)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임기제공무원 사례 : 산림청 헬기조종사, 질병청 역학조사관 등

**Q2** 전문직위와 전문직공무원은 다른 건가요?

**A2** 전문직위는 직위(업무) 중심, 전문직공무원은 신분 중심의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전문직위, 전문직공무원 모두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전문성 강화 제도입니다.

공무원이 전문직위를 맡게 되는 경우 일반직위에 비해 강화된 필수보직기간을 적용받을 뿐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반면, 전문직공무원은 하나의 전문분야에서 평생 근무하면서 별도의 계급체계 및 성과평가 체계를 적용받는 공무원입니다.

※ 전문직 공무원 및 전문직위 사례(인사처)

- (전문직공무원) 인재채용 : know-how 축적이 필요한 핵심 분야
- (전문직위) 복무, 성과, 급여 등 주요 인사제도 기획 담당  
인사 계약·감사 등 전문인력 양성 필요 주요 업무

**Q3** 통상적인 계급 구분(1~9계급)이나 직렬 구분(행정, 전산, 공업 등)이 없는 공무원도 있나요?

🗣️ 전문경력관, 연구·지도직, 전문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계급 구분 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주로 연구·지도·특수기술 또는 특수 분야에 종사하며, 업무 특성과 난이도에 맞는 별도의 구분 체계 및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 직종별 계급체계

구분	전문경력관	연구직	전문직
적용 분야	실무적 숙련이 요구되는 직위 (x-ray 검색·판독, 사진촬영 등)	연구업무 담당 분야 (학예연구, 농업연구 등)	고도의 전문성, 장기 재직이 필요한 전문분야 (국제통상, 인재채용 등)
계급 구분	계급구분 미적용 3개 직위군 : 가·나·다	2계급 - 연구관, 연구사	2계급 - 수석전문관, 전문관

**Q4** 인사특례가 무엇인가요? 어떤 사례가 있나요?

🗣️ 인사특례란 모든 부처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의 예외적 적용을 허용함으로써 부처의 특성에 맞는 인사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동일한 인사제도의 운영은 정부 차원의 인사관리에는 효율적이지만 부처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거나 급변하는 환경에 시의성있게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인사특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부처에 자율성과 유연성을 부여하여 탄력적인 인사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 AI 같은 첨단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하는데 현행 법규상 지정된 자격요건으로는 모집이 어려울 경우, 부처는 채용에 관한 특례를 통해 부처 자율적으로 자격요건을 조정하여 채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재난의 직접적인 대응 및 복구를 위해 긴급히 인력 투입이 필요한 경우, 부처는 인사특례를 통해 결원이 없더라도 채용후보자를 임용함으로써 신속한 충원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도 핵심내용

☑️ 특수제도

1. 전문경력관

- (개념)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업무 분야에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직무의 성격·난이도 등에 따라 3개의 직위군(가·나·다)으로 구분
- (분야) 직업훈련교사, X-ray 판독, 홍보·사진, 비상계획, 보도제작 등
- (인사관리) 정년·휴직·명예퇴직 등 신분보장은 다른 일반직과 동일하나, 승진·전보·전직·파견 등은 직위 특성상 제한됨

2. 연구·지도직 공무원

- (개념) 연구나 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계급) 연구·지도관, 연구·지도사 2개 계급으로 구분
- (보직) 전직제한 : 7년, 전보제한 : 일반직 동일(4.5급 이하 3년, 과장급 이상 2년)

3. 전문직공무원

- (개념)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전문분야를 설정, 해당 전문 분야 내에서만 근무하는 공무원
- (분야) 환경보전·대기환경(환경부), 재난관리(행안부), 식품안전(식약처) 등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분야 등 11개 전문분야 운영
- (계급) 수석전문관(3~4급 상당), 전문관(5급 상당) 2개 계급으로 구분
- (보직) 전직제한 : 7년, 전보제한 : 전문분야 외 전보 불가, 전문분야 내 1년

4. 임기제공무원

- (개념) 직무 특성, 임용관리 특수성을 이유로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기 동안 그 신분이 보장됨

★ 국가공무원 인사제도 기초상식

- (종류) 직제 등에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는지 여부, 임용 목적 등을 기준으로 일반임기제, 전문임기제, 한시임기제로 구분

구분	정의
일반임기제 (고위, 3~9급)	· 직무 특성, 임용관리 특수성을 이유로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
전문임기제 (가~마급)	· 직제상 정원과 별도(또는 포함 가능)로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
한시임기제 (5~9호)	· 예산의 범위 내에서(정원 외)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활용을 위해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

\* 임기제공무원도 시간선택제 근무 가능 :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 /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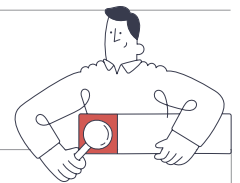
- (인사관리) 특정 직위에 일정 기간 임용되는 공무원 특성상 정년, 명예퇴직, 승진·전보·전직·파견 등은 적용 제한됨
- (근무기간)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근무 (한시임기제 : 1년 6개월)  
\* 성과우수자는 추가 5년 범위 내 근무기간 연장 가능(한시임기제: 필요시 6개월)

5. 전문직위

- (개념)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적합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보직하고, 인사·보수상 우대함으로써 장기근무 유도
- (지정 분야) 국제협력,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거나 생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 기타 전략적 전문인력 육성이 필요한 분야 등
- (필수보직기간) 국장급 이상 2년, 과장급 3년, 담당급 4년  
\* 전문직위군 : 전문직위 필수보직기간의 2배(동일 직위군 내 1년)

☑ 인사특례('23.8월 기준)

구분	특례내용
채용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증 소지자 경력채용 시, 자격증·경력 기준 조정 가능</li> <li>· 경력자 경력채용 시, 경력 기준 조정 가능</li> <li>· 학위 소지자 경력채용 시, 학위 소지 후 경력 기준 조정 가능</li> <li>· 4급 이상 경채 시 임용예정 직무가 동일한 '직위의 군(群)' 단위 선발 가능</li> <li>· 재난 대응 등을 위한 채용후보자 정원 외 임용 가능</li> </ul>
임용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속기관장에 대한 임용권 위임 확대</li> <li>· 직무관련 특허나 민간근무경력을 전직요건으로 설정 가능</li> <li>·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부처별로 자율 설정</li> <li>· 승진임용 시 심사대상 배수 범위 조정 가능</li> <li>· 5급으로 승진 시 임용순위명부의 성적 반영비율 조정 가능</li> <li>· '7급 → 6급'으로의 근속승진 실시 횟수 자율 운영</li> </ul>
인사 관리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직위 전문관 사전전보 자율 운영(인사처 협의 면제)</li> <li>· 국(局) 내 유사직위 등에 대한 필수보직기간 별도 운영</li> <li>· 정기명예퇴직 일정 자율 운영</li> <li>· 과장급 이상 성과연봉 지급 기준 자율 운영</li> <li>· 임기제 의사 신규채용 시 연봉 자율책정범위 확대</li> <li>· 사전 계획한 연가·유연근무 시간 자기결재 가능</li> </ul>



? 더 알고 싶다면?

☞ 관련 법령

- 전문경력관 규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제22조의4~6(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근무기간 등) 등



☞ 담당자 연락처 : 통합인사정책과 044-201-8297(특수제도) 인사혁신기획과 044-201-8319(인사특례)

# IV

## 인재개발·적극행정

- ★ 인재개발
- ★ 적극행정

공무원도 해외 대학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적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요?



### 11 인재개발

#### Q1 공무원은 직급별·업무분야별로 어떤 교육을 받나요?

직무 전문성을 갖춘 경쟁력 있는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등을 통해 직급과 전문 분야를 고려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각급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기관(공공기관, 민간) 등  
※ 교육내용별 유형(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등)

구분	교육내용	대상	실시방법(주관기관)
기본교육	신규자 교육	올바른 공직자세, 공직의 이해, 공통역량 등	신규자 각급 교육훈련기관
	승진자 교육	직급별 리더십, 공통역량 등	승진자 각급 교육훈련기관
전문교육	전문분야별 직무수행기술·지식	재직자	각 부처 직장교육, 각급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기관
기타교육(시책교육 등)	국정철학, 현안시책, 올바른 공직자의 자세 및 각종 일반소양 교육 등	재직자	각 부처 직장교육, 각급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기관
자기개발 학습	직무의 창의성,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연구 활동	재직자	각급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기관, 개인학습(각 부처 지원)
퇴직준비 교육	공직퇴직 후 변화관리 및 전직 등 제2의 인생 설계교육	퇴직 예정자	공무원연금공단, 각급 교육훈련기관

특히,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국가공무원 교육 훈련을 선도하는 대표기관으로서, 직급별 신규자·재직자를 대상으로 국정철학·공직가치 확립과 직무전문성 함양을 위한 양질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Q2** 공무원으로 입직 후 국내 대학 또는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은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공무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학사·석사 야간(주말) 위탁과정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학사 야간(주말)과정은 연간 약 50명, 석사 야간(주말)과정은 연간 약 250명 규모로, 연령·근무기간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발되면 교육에 필요한 입학금·등록금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훈련계획을 이행(학위취득 등)하지 못하거나, 연구보고서·논문 등을 표절할 경우 등의 사유가 있다면 지원받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참고 : 국내 대학(원)에 관한 다양한 교육정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알리미 누리집 (academyinfo.go.kr)에서 확인 가능

**Q3** 공무원도 해외 대학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 **주요 국정과제 및 부처 현안과제 연구를 위해 근무경력, 어학요건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을 선발하여 국외 장·단기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외장기훈련(1년 이상)은 영어권(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과 비영어권(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등)으로, 국외단기훈련은 개인과정(6개월 이내), 팀제과정(2주 이내)으로 구분됩니다.

훈련요건 등의 심사를 거쳐 훈련대상자로 최종 선발된 공무원들이 훈련과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국가로 파견되어 교육훈련을 받게 됩니다. 국외 교육훈련을 신청하기 위한 최소한의 어학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외훈련 어학요건(장기훈련 기준,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별표 3])  
 - TOEFL IBT 83점, IELTS 6.0점, G-Telp(Level II) 77점, TOEIC 775점, TEPS 385점 이상 등

**Q4** 교육훈련으로 인한 업무 공백으로 향후 진급 등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미래지향적 직무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훈련을 이수한 시간은 승진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실적 시간에 포함됩니다.

**Q5** 모바일이나 인터넷 등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교육을 받는 방법은 없나요?

☎ **정부·민간의 다양한 콘텐츠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는 「인재개발플랫폼」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지능형 학습 허브(Hub)인 「인재개발플랫폼」(www.learning.go.kr)은 AI·빅데이터 기술로 인사·직무 정보, 학습이력 등을 분석하여 개인별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추천해주고, 누구나 지식 크리에이터가 되어 나만의 지식과 노하우를 학습 콘텐츠로 만들어 공유할 수 있으며, 공무원 비대면 교육에 최적화된 실시간 화상교육 시스템(인재ON)을 지원합니다.

한편, 「인재개발플랫폼」과 연계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www.e-learning.nhi.go.kr)를 통해서도 공직자 필수교육과정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콘텐츠를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채널인 '인재교육TV'에서는 주요 국정과제와 관련된 각계각층 명사의 수준 높은 실시간 온라인 교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도 핵심내용

☑ 공무원 인재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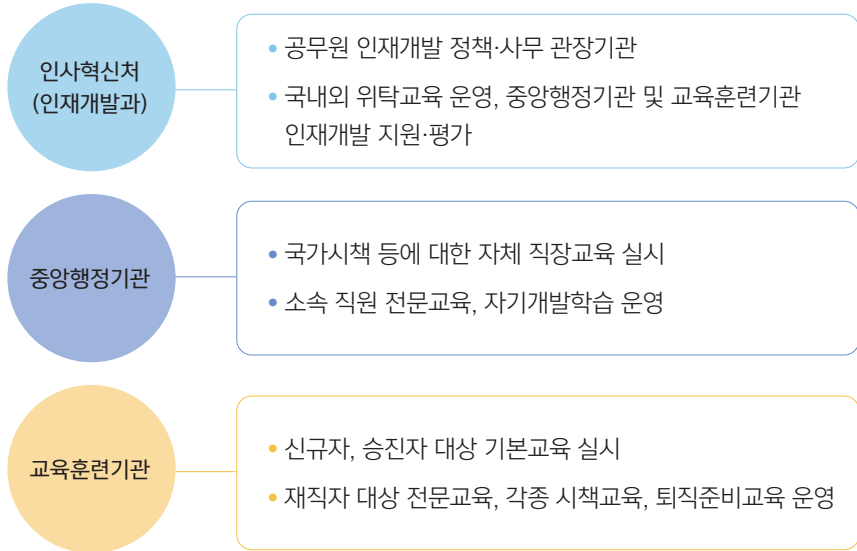
○ 목적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조)

- 국가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가치가 확립되고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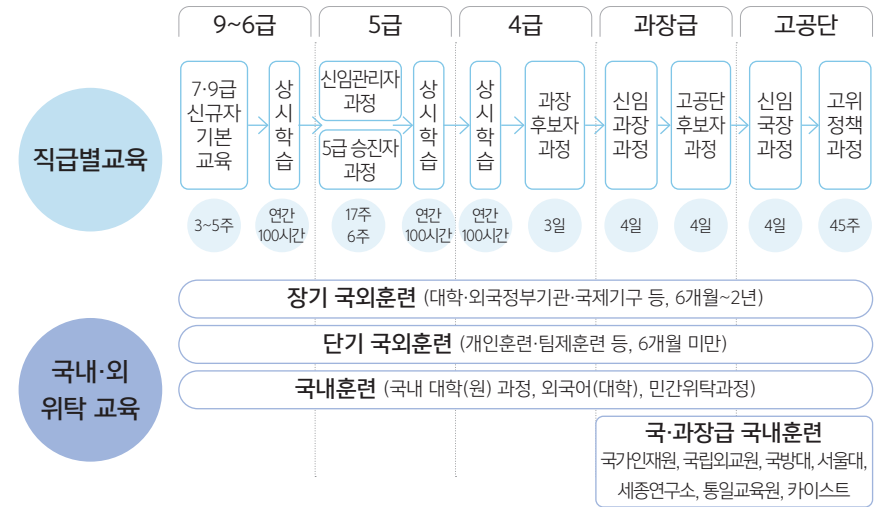
○ 법적 근거

법률	대통령령	예규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 운영 체계



○ 교육 체계



**자기개발학습** : 자기개발계획 / 부서장 코칭·멘토링

**이러닝·모바일교육**(인재개발 플랫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및 각 교육훈련기관)

- 상시학습 : 4급 이하 공무원 대상, 승진을 위해 연간 80~100시간의 자기주도적 학습 실시 의무
- 연구모임 : 정책연구 등을 위해 자발적 연구모임 구성·운영. 연간 실적을 평가하여 운영비 지원

○ 상시학습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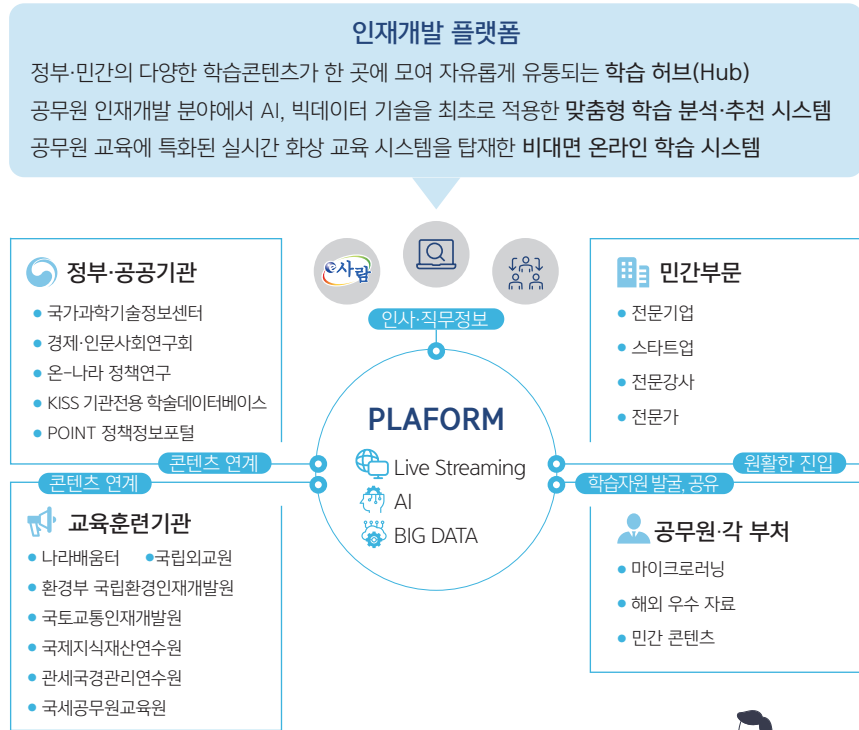
- 4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승진을 위해 연간 80~100시간의 교육이수를 의무화한 제도(실적 미달시 승진심사 대상 제외)
  - ※ 부서장 성과계약 체결시 소속 직원에 대한 상시학습 관리책임 부여
- 집합교육, 이러닝뿐만 아니라 연구모임, 멘토링, 학위·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형태의 직무 관련 활동을 학습으로 폭넓게 인정
  - ※ 세부적인 교육 형태·내용은 각 부처에서 직무특성을 고려하여 자율 운영

○ 연구모임 운영 지원

-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한 공직사회 전문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모임 구성·운영, 연간 실적을 평가하여 지원
- 우수 연구모임에 인센티브 제공, 우수사례 전 부처 공유·확산
  - ※ 우수한 40개 연구모임에 연구비 차등 지원 및 최상위 4개 연구모임에 표창

국가공무원 인사제도 기초상식

○ 국가 인재개발 지능형 오픈 플랫폼



**? 더 알고 싶다면?**

**관련 법령**

·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관련 웹주소**

인재개발플랫폼(www.learning.go.kr)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www.nhi.go.kr)  
나라배움터(www.e-learning.go.kr)

**담당자 연락처**

: 인재개발과 044-201-8223  
디지털인재개발과 044-201-8553

**12 적극행정**

**Q1 적극행정이 무엇인가요?**

적극행정은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해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극행정은 정책기획, 사업집행, 현장근무, 대민업무, 내부지원 등 모든 분야에서 가능하며, 국민을 위해 창의적, 선제적, 적극적으로 업무를 발굴하고 추진한 것이라면 모두 적극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가 판단기준이 됩니다.

참고로 적극행정과 대비되는 소극행정은 공무원의 ‘적당편의’, ‘업무해태’, ‘탁상행정’, ‘관중심행정’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 국민편의성을 우선한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신용카드포인트 사용이 번거로워 연간 1천억원 이상의 포인트가 소멸되고 있었던 상황. 금융위원회는 자투리 카드포인트를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신협회·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시스템과 금융결제원·계좌이체·조회시스템을 연동해 모바일 앱 하나로 1분만에 카드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게 하여 그 결과 서비스 개시 이후 약 4개월간 2,034억원이 현금화 됨

**Q2** 적극행정을 위한 판단이나 결정이 어려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미비하여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경우 적극행정 지원제도인 ‘적극행정위원회’와 ‘사전컨설팅’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적극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각 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 요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규정이나 지침해석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감사기구(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감사원)에 규정·지침의 해석 또는 업무처리 방향에 대해 의견을 요청하는 ‘사전컨설팅’이 있습니다.

**Q3** 적극행정을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돼서 감사나 징계를 받게 되는건 아닌가요?

🗣️ 적극행정 공무원을 감사나 징계의 부담으로부터 보호·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적극행정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사전컨설팅’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면책이 가능합니다.

사후적으로 감사·징계·소송 단계별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적극행정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징계를 면제·감경하고,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및 구상권 행사 제한, 공무원 책임보험을 통한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업무의 적극 처리,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을 것

**적극행정위원회 활용 사례 : 백신 폐기량 최소화를 위한 포장개봉 유통 허용**

법령상 의약품을 개봉하여 소량으로 판매가 어려운 상황. 코로나19 백신의 충분한 확보와 의료현장의 신속하고 원활한 수급을 위해 질병관리청장의 관리·총괄 하에 도매상이 유통 단계에서 백신치료제를 개봉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개정 전까지의 공백기간 동안에도 예외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백신 폐기량을 최소화함

**Q4** 적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우대하기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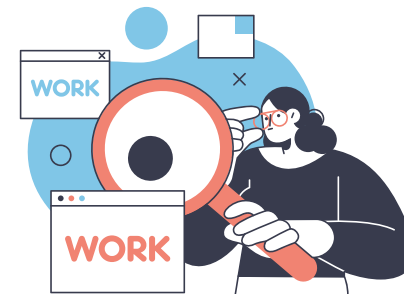
기관별로 우수공무원을 선발(매분기)하여 인사상 인센티브를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매년 범정부적으로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을 통해 창의적·적극적 업무수행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직자를 선발, 훈·포장 등을 수여하고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기관을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및 공유하고 있습니다.

※ 국민 누구나 ‘적극행정 온(on)’ 홈페이지를 통해 주변의 적극행정 공무원 추천 가능

아울러, 일상 업무에서 적극행정 실천 의지를 높이고자 작지만 의미 있는 적극행정 노력에 대해 수시로 즉각 보상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도 '23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도 핵심내용

적극행정 의사결정 지원제도

적극행정위원회 의견 제시

-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적극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신속하게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지원
- ※ 구성 : 민간 전문가(과반수) 포함 9~45명 위원(각 기관별 설치)

사전컨설팅 제도

- 규정이나 지침 해석에 어려움을 겪어 적극적 업무추진이 곤란한 경우, 감사기구(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감사원)가 규정·지침의 해석 또는 업무처리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

적극행정 법제 지원

- 현재의 법령으로 적극행정이 가능한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제처가 법령입안, 정비 및 해석 등 법제행정을 통해 적극행정의 실천을 지원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제도

적극행정 면책

-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서는 그의 행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음
- 공무원이 사전 의사결정 지원제도(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사전컨설팅)를 활용한 경우 감사면책\* 또는 징계가 면제됨
- \*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자체감사만 면책, 감사원 감사시 면책건의 (사전컨설팅) 자체감사와 감사원 감사 면책
- ※ 다만,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 면책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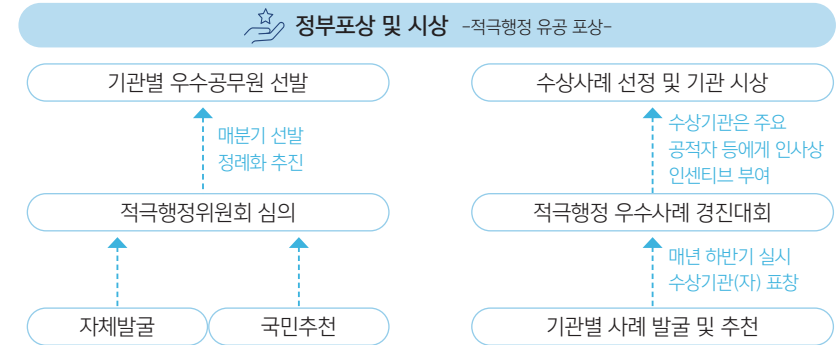
소송 등 지원

- 공무원수행, 적극행정 중 징계의결 및 민·형사상 소송을 당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공무원 책임보험' 또는 '적극행정 소송지원'을 통해 지원
- 적극행정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구상권 행사 자제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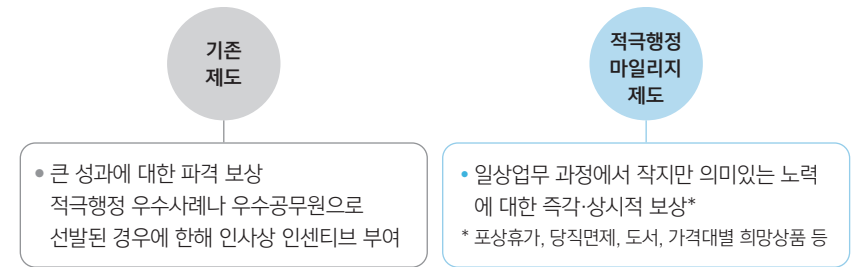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사상 우대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국외훈련 우선선발 등 인사상 우대조치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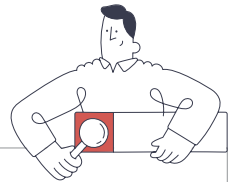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 일상 업무에서 작지만 의미있는 노력에 대해 즉각적인 보상 부여



적극행정 제도 운영 흐름도



더 알고 싶다면?

- 관련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행정기본법 제4조(행정의 적극적 추진)
  - 적극행정 운영규정
- 관련 웹주소**

  - 적극행정 온(ON)(www.mpm.go.kr/proactivePublicService)
- 담당자 연락처** : 적극행정과 044-201-8326

# V

## 성과·보수

- ★ 성과평가
- ★ 보수



### 13 성과평가

#### Q1 공무원도 기업처럼 성과평가를 하나요?

그렇습니다. 각 기관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위해 공무원도 매년(또는 반기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합니다.

현행 공무원 성과평가 체계는 직급별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4급 이상에 대한 '성과계약 등 평가'와 5급 이하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과평가는 공무원이 일정 기간 업무를 수행한 과정과 결과, 그리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 공무원 성과평가의 표준 체계

구분	성과계약 등 평가	근무성적평가
대상	고위공무원단 / 3·4급	5급 이하
평가시기	연1회 / 12.31.을 기준으로 실시	연2회 / 6.30., 12.31.을 기준으로 실시
평가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③ 중 하나 또는 그 이상</li> <li>① 성과목표달성도(개인실적),</li> <li>② 부서운영평가(부서실적),</li> <li>③ 직무수행자질·능력(직무수행능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항목: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li> <li>추가항목: 직무수행태도, 부서평가 등을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활용</li> </ul>
평가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위공무원 : 5개 등급(최상위 20% 이하, 하위 2개 등급 10% 이상 배정)</li> <li>3·4급 : 3개 등급 이상</li> </ul>	3개 등급 이상
평가절차	성과계약 체결 → 중간점검 → 최종평가	성과목표 설정 → 중간점검 → 최종평가

#### Q2 성과평가의 결과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공무원 성과평가의 결과는 승진심사,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의 기초가 되며, 성과급 지급에도 활용됩니다.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성과연봉, 성과상여금)은 성과평가 결과 외에도 부서업무평가, 정부업무평가 등 다양한 평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Q3** 평가는 관리자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나요?

평가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관리자(상위 감독자)가 평가합니다.

대체로 부서(과, 팀 등)의 관리자(부서장)가 소속 직원을 평가하는데, 예를 들어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내 성과급여과 소속 공무원의 평가자는 성과급여과장(관리자)이 됩니다.

한편, 이러한 상사 1인에 의한 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23년부터 '동료평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동료평가는 동일부서에서 함께 근무하여 평가대상의 실적을 잘 아는 다수의 동료를 평가자로 하는 성과평가로, 동료평가 결과는 성과급 지급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Q4** 공무원 성과평가는 근무연수가 높은 사람이 유리한 연공서열 중심으로 운영되나요?

공무원 성과평가는 평가대상기간 중 근무실적과 업무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하며, 연공서열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만약, 연공서열에 따라 평가한다면 저연차 공무원들은 성과급 상위등급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저연차 공무원이 높은 등급의 평가를 받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 성과평가 운영 사례 : 중앙부처 A기관의 경우,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에서 6급 공무원으로 승진 후 1년 미만자 중 60% 가량이 상위등급(S·A등급)을 받았으며, 8·9급 공무원 중 입직 1년 미만자도 최고등급(S등급)을 받음

**Q5** 공무원의 성과급 지급 기준은 기관마다 다른가요?

인사혁신처가 정한 지급 기준을 토대로 하되, 각 기관의 업무 특성, 인적 구성 등을 반영하여 일정 부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와 같이 인사혁신처가 정한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표준안'을 따를 경우, 6급 공무원은 성과급으로 최대 657만원('23년 기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성과상여금(6급 이하) 등급별 인원 및 지급률 표준안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6급 이하	인원비율	20%	40%	30%	10%
	지급률	172.5%	125%	85%	0%
지급액 예시 (6급, '23년 기준)		657만원	476만원	324만원	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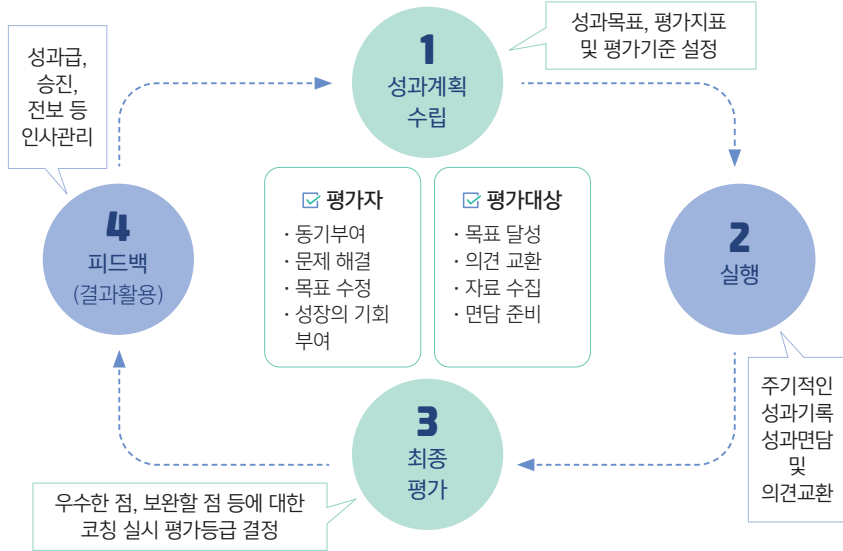
※ 복수직 4급 이하에 대한 성과연봉 및 6급 이하에 대한 성과상여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등급수, 인원비율, 지급률 등을 부처 자율 결정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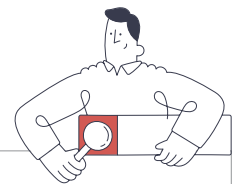
제도 핵심내용

☑ 공무원 성과평가 절차



구 분	주요 내용
3. 최종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급 이상(성과계약등 평가) : 평가자의 평가 후 확인자가 점검 및 확정</li> <li>5급 이하(근무성적 평가) : 평가자 평가, 평가단위 평가 후 근무성적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등급 확정</li> </ul>
4. 피드백 (결과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승진, 성과급(성과연봉, 성과상여금), 보직관리, 교육훈련, 고위공무원 적격심사 등</li> </ul>

구 분	주요 내용
1. 성과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자와 평가대상자 간 합의를 통해 이루어짐</li> <li>성과목표, 평가지표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계획 수립</li> <li>연초에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li> </ul>
2. 실행 성과면담 /주기적 성과기록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과면담은 평가자와 평가대상자 간에 성과목표를 정하고, 수행과정과 결과, 평가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으로 반드시 시행하도록 규정함</li> <li>목표달성 정도와 추진상황을 기록하고 점검</li> <li>업무추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코칭</li> <li>기록을 토대로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li> </ul>



? 더 알고 싶다면?

📖 관련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보수 규정 제39조(성과연봉의 지급) 공무원 수당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4장, 제6장, 제8장

📞 담당자 연락처 : 성과급여과 044-201-8404

## 14 보수

### Q1 공무원의 보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봉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방공무원의 경우는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므로 위험근무수당과 화재진화 등 특수 업무에 종사하므로 특수업무수당이 지급되며, 근무지가 도서·벽지인 경우 특수지근무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공통수당으로는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등이 있으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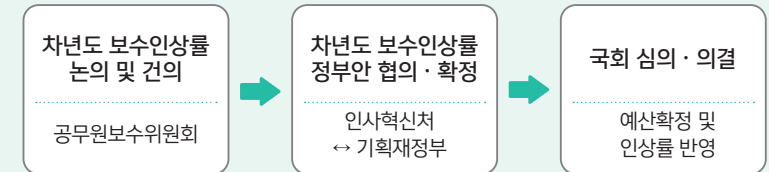
※ 보수 항목별 현황

봉급(기본급)	직종별 11개 봉급표(일반직, 연구직, 경찰·소방직, 초·중·고 교원, 군인 등)
수당	공통수당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직무수당 직급보조비, 특수업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생활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주택수당

### Q2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민간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민간전문가, 공무원 노조위원, 정부위원으로 구성된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는 논의를 통해 차년도 보수인상안을 인사혁신처장에게 건의합니다.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 간 협의를 거쳐 확정된 안은 국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 Q3 7·9급 신규공무원은 얼마를 받나요?

'23년 기준으로 초임(1호봉) 공무원의 월 보수는 7급 259만원, 9급 236만원 수준입니다.

구분	연보수*	월평균 보수	월 봉급액**	직급 보조비(월)	정액 급식비(월)	명절 휴가비 (월평균)	초과 근무수당 (월정액분)
7급(1호봉)	3,110만원	259만원	196만원	18만원	14만원	20만원	11만원
9급(1호봉)	2,831만원	236만원	177만원	18만원	14만원	18만원	10만원

\* (참고) 봉급 및 수당액은 만원 단위로 반올림하여 표기

\*\* 계급·호봉별 봉급액은 「공무원 보수규정」, 각종 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

이 외에도 초과근무수당·가족수당·특수업무수당 등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고려하면 실제 보수는 해당 금액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Q4** 공무원 입직 동기면 같은 보수를 받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하여 지급하며, 이에 따라 같은 해에 입직한 동일 직급·동일 근무연수의 공무원이라도 보수 격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전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매년 성과급을 차등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 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성과에 따라 기본연봉(기본급)도 차등 인상됩니다.

5급 공무원('23년 기준)의 경우 최상위 성과등급과 최하위 성과등급 간 연봉 인상액 격차는 150만원 수준입니다. 1년간 발생하는 연봉 격차가 최대 150만원 이니, 10년이면 1,500만원 까지도 연봉 격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봉 격차 사례 : 5급으로 입직한 25년차 A부처 ○○국장과 B부처 △△국장의 경우, 모두 같은 해에 입직한 동기지만 성과에 따른 차등인상의 영향으로 이들의 실제 연봉은 1,570만원 가량 차이가 발생함. 여기에 그해 성과연봉(S등급-B등급) 격차까지 추가로 고려하면, 2,373만원의 총 연봉 격차가 발생 가능

**Q5** 공무원 채용이전 근무경력을 호봉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공무원 이전 근무경력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호봉경력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채용 전 공무원 및 군인 근무 경력은 모두 호봉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공공기관이나 민간분야의 근무경력에 대해서도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 기간의 일부를 호봉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호봉합산 대상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기관의 안내에 따라 합산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경력인정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Q6** 업무량이 많아 야근을 할 경우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근무명령에 따라 초과근무를 한 사람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업공무원, 재난·재해 대응 또는 비상근무 등을 제외하고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시간은 日 4시간, 月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7** 공무상 출장으로 발생한 비용은 어디까지 정산받을 수 있나요?

🗣️ 공무출장 중 발생한 운임·숙박비·식비·일비·준비금(국외출장에 한함)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지내(같은 시·군·섬 또는 왕복거리 12km 미만) 국내출장의 경우 출장시간에 따라 여비가 정액 지급됩니다. 근무지외 국내출장 및 국외출장의 경우 여행일수에 따라 일비·식비가 정액 지급되며, 운임 및 숙박비는 영수증 제출 시 상한액 범위 안에서 실비 지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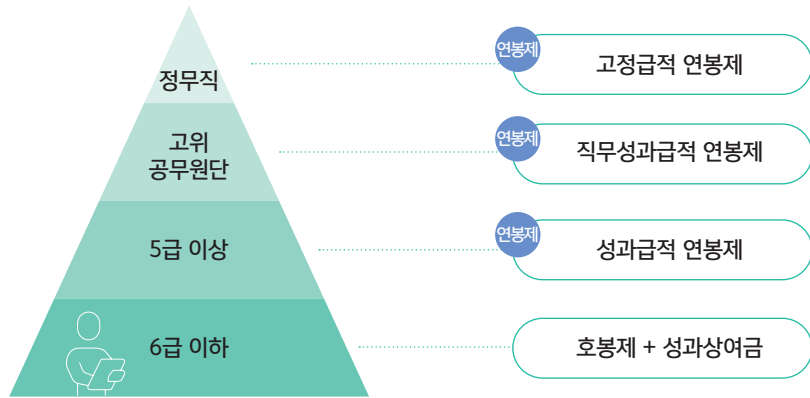
※ 공무출장 시 지급되는 여비항목

국내출장	근무지내 국내출장	(4시간 미만) 1만원, (4시간 이상) 2만원 정액
	근무지외 국내출장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국외출장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준비금



제도 핵심내용

☑ 계급별 보수체계



- (6급 이하) 재직기간 등을 반영한 직급별 호봉에 따라 차등적 봉급을 지급하는 호봉제 적용 → 봉급 + 성과상여금(S~C등급)
  - ※ 군인, 초·중·고 교원, 검사 등 일부 직종은 업무 특성 고려, 전 직급 호봉제 적용
  - ※ 직종별 11개 봉급표(일반직, 전문경력관, 공안업무 종사자, 연구직, 지도직, 우정직, 경찰·소방, 초·중·고 교원, 대학교원, 군인, 헌법연구관 등) 운영
- (5급 이상)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연봉을 차등 인상하는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 기본연봉 + 성과연봉(S~C등급)
- (고공단) 직무등급에 따라 직무급을 차등 지급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연봉(기준급)을 차등 인상하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 기본연봉 [ 기준급 + 직무급(가등급 1,300만원, 나등급 700만원) ] + 성과연봉(S~C등급)
- (정무직) 직급별 고정액\*을 지급하는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
  - \* '23년 기준 : 대통령 2억4,456만원, 총리 1억8,959만원, 장관 1억3,942만원, 차관 1억3,540만원
- 기본급(봉급, 기본연봉) 및 성과급(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외 직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부가 급여로 수당 등\* 추가 지급
  -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특수업무수당 등

☑ 공무원 수당제도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액
상여수당	대우공무원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급 이하 : 5년 이상</li> <li>• 5급 이상 : 7년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급의 4.1%</li> </ul>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공무원(5년 이상 근무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무연수에 따라 기본급의 0~50%씩 연 2회 지급 * (가산금) 월 5~13만원</li> </ul>
	성과상여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급 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급별 기준금액의 0~172.5%</li> </ul>
가계보전수당	가족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공무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 월 4만원, (기타) 월 2만원</li> <li>• (자녀) 첫째 월 3만, 둘째 월 7만, 셋째이후 월 11만원</li> </ul>
	자녀학비보조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외학교(유·초·중·고) 취학 자녀를 둔 재외공무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비전액(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li> <li>※ 유치원 : 월평균 \$300</li> <li>초·중 : 월평균 \$700, 초과시 초과액의 65%</li> <li>고 : 월평균 \$600, 초과시 초과액의 65%</li> </ul>
	주택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인(하사·중령)</li> <li>• 재외공무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인) 월 16만원</li> <li>• (재외공무원) 공관 소재 주택 임차료</li> </ul>
	육아휴직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휴직 한 공무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봉급액×80%(하한 70만~상한 150만)</li> <li>※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한 공무원은 휴직 최초 3개월간 월봉급액 100%(상한 250만)</li> </ul>
특수지근무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벽지 및 접적 지역 근무자, 재외공무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지역구분(가~라)에 따라 월 3~6만원</li> <li>• (군인) : 월 2~6만원</li> <li>• (재외공무원) 가~다지역 (\$720~\$2,500)</li> </ul>	

★ 국가공무원 인사제도 기초상식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액
특수 근무 수당	위험근무수당	• 위험직무 종사자	• 위험도(갑을병종)에 따라 월 4만원~6만원
	특수업무수당 (4개분야)	• 특수행정분야 종사자	• (기술분야) 기술정보수당 • (교육 및 연구분야) 연구업무수당, 교직수당 등 • (특수업무분야) 합정수당, 항공수당 등 • (재외직분야) 재외근무수당
	업무대행수당	• 업무대행 공무원	• 월 20만원 * 다수일 경우 인원수로 나눈 금액
	군법무관수당	• 군법무관	• 월봉급액의 35% 이내
초과 근무 수당 등	초과근무	시간외 근무수당	• 5급 이하 • 봉급기준액×1.5/209×시간
		야간 근무수당	• 5급 이하 야간근무자(현업) • 봉급기준액×0.5/209×시간
		휴일 근무수당	• 5급 이하 휴일근무자(현업) • 봉급기준액×1.5/26일×일수
	관리업무수당	• 4급 이상	• 월봉급액의 9%
실비 변상	정액급식비	• 전 공무원	• 월 14만원
	직급보조비	• 전 공무원	• 월 320만원~17.5만원 * 하사 16.5만원
	명절휴가비	• 전 공무원	• 기본급의 60%(설날, 추석)
	연가보상비	• 1급 이하 공무원	• 20일 이내(월봉급액 86%×1/30×보상일수)

✓ 공무원 여비제도

○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경비에 대해 여비 지급

구분	지급항목	지급방법	지급액
국내 출장	근무지 내 출장	근무지내 여비	정액 • 1만원(4시간 미만), 2만원(4시간 이상) * 공용차량 이용시 1만원 감액 * 왕복 2km 이하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2만원 내에서 실비 지급
		근무지 외 출장	운임
	숙박비		실비 (1夜당) • 10~7만원(상한범위 내 실비) * (상한액) 서울 10만원, 광역시 8만원, 그 밖의 지역 7만원 * 친지집 등에서 숙박시 1(1夜당) 2만원
		식비·일비	정액 (1日당) • 2.5만원 * 공용차량 이용시 일비 1/2 감액 * 식비가 소요되지 않는 등의 경우 감액(미지급)
국외출장	운임	실비 • 항공운임은 실비(계급별 객실등급 구분) * 철도, 선박 및 자동차운임은 실비지급	
	숙박비	실비 (1夜당) • \$471~\$81 상한범위 내 실비 * 출장지역·계급별로 차등	
	일비	정액 (1日당) • \$60~\$30 정액 지급 * 계급별로 차등	
국외출장	식비	정액 (1日당) • \$186~\$37 정액 지급 * 출장지역·계급별로 차등	
	준비금	실비 • 실비 지급 * 비자발급, 예방접종, 여행자보험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법정감염병 진단검사비 5종	

# VI

## 연금·복지

- ★ 연금
- ★ 후생복지
- ★ 재해보상

공무원이면 공무원연금을 꼭 가입해야 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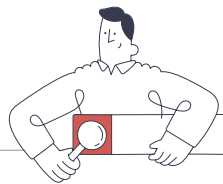


### ? 더 알고 싶다면?

#### 🔗 관련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46조(보수결정의 원칙),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여비 규정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 담당자 연락처 : 성과급여과 044-201-8395(보수제도)  
044-201-8399(수당제도)  
044-201-8403(여비제도)



**15 연금**

**Q1 공무원이면 공무원연금을 꼭 가입해야 하나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모든 공무원(군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제외)은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할 때까지 공무원연금에 가입하고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1960년에 도입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공적연금 제도이며, 퇴직공무원에게 지급할 연금을 현재 재직자의 보험료 납부를 통해 충당하는 세대 간 연대의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임의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 공무원연금제도 :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
  - 공적연금제도 : 공무원의 노령·장애·사망 등 소득상실사유 발생 시에 적절한 급여 실시
  - 공무원에 대한 종합사회복지기능 수행 : 퇴직연금급여 이외 재해보상급여, 부조급여, 퇴직수당 및 후생복지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Q2 연금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나요?**

‘공무원연금공단 연금복지포털’ 또는 ‘e-사람 연금정보’에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시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전체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최대 61.2%까지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일시금이 지급됩니다.

\* 연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개인별 과세소득을 바탕으로 산정

※ 2016년 임용자(30년 재직) 첫 달 예상 연금수령액('22년말 현재 기준)

9급 입직 → 6급 퇴직	7급 입직 → 4급 퇴직	5급 입직 → 2급 퇴직
179만원	210만원	236만원

※ 2013년 임용자(10년 재직) 첫 달 예상 연금수령액('22년말 현재 기준)

9급 입직 → 現 7급	7급 입직 → 現 6급	5급 입직 → 現 4급
68만원	72만원	80만원

**Q3 임용 전 군 복무기간도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본인 희망(신청)에 따라 임용 전 군 복무기간도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산입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기간의 소급기여금은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산입할 수 있는 군 복무기간

복무 구분	산입 기간
현역병, 일반하사, 의무경찰순경(전투경찰), 의무소방대원, 교정시설 경비교도	실 복무기간
공익근무요원	24·21·18개월
상근예비역	실 복무기간
자연계 교원요원	6개월
특수전문요원	6개월
대체복무요원(대체역)	최대 18개월

▶ 특례보충역(과학기술원생, 방위산업체·연구기관 종사자, 산업기능요원 등)은 산입 불가

한편 사병이 아닌 부사관, 장교로 임용되어 군 복무를 한 경우 재직기간 합산제도를 통해 군 복무기간을 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사관·장교로 재직했던 기간에 대해 지급받았던 퇴직급여를 공무원연금공단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Q4** 공무원연금 지급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4차례에 걸친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공무원 연금개혁을 실시하면서 연금 지급률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민관 간·세대 간·직역 간 형평성을 제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금개혁은 기대여명의 연장과 연금수급자 증가로 인해 과거에 비해 공무원연금 재정이 악화되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실시되었습니다.

구분	1995년 개혁 (1996.1.1.시행)	2000년 개혁 (2001.1.1.시행)	2009년 개혁 (2010.1.1.시행)	2015년 개혁 (2016.1.1.시행)
배경	1993년 최초 수지적자 발생	IMF 구조조정 이후 대량퇴직으로 기금 고갈	보전금 증가 / 국민연금 개혁('07)	보전금 증가 / 국민 연금 형평성 논란
기여율	4.9% (보수월액 5.5→6.5→7.5%)	5.5% (보수월액 8.5%)	7.0% (기준소득월액)	9.0% (기준소득월액)
지급률	약 2.17% 최종보수월액의 76%	약 2.14% 최종3년 평균 보수월액의 76%	1.9% 전체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62.7%	1.7% 전체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61.2%
연금지급 개시연령	도입: 60세 (‘96년 이후 임용자)	확대 (‘95년 이전 임용자도 일부)	60세→65세 (‘10년 이후 임용자)	65세로 확대 (~2033) (‘96년 이후 임용자)

※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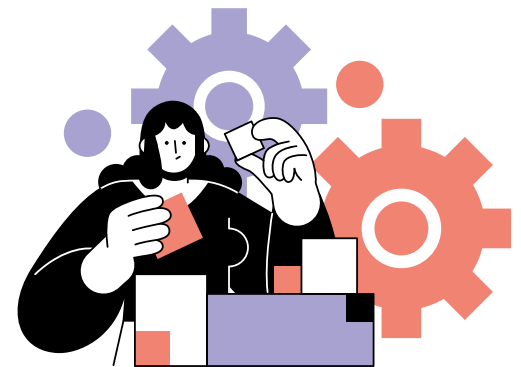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기여율	개인 9.0% / 정부 9.0%	개인 4.5% / 사용자 4.5%
지급률	재직기간 1년당 1.7%	가입기간 1년당 1.0%
지급개시연령	65세	

**Q5** 장·차관은 하루만 일해도 공무원연금을 받나요?

장관, 차관도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므로, 하루만 일한 경우에는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차관 공무원도 공무원연금법 제43조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후, 65세가 되는 때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공무원연금(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에 일반직 공무원 등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후 장·차관으로 임용된 경우로서 종전 재직기간을 합산한다면, 장·차관으로서의 재직기간이 짧더라도 관련 요건 충족시 공무원연금(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핵심내용

☑ 공무원연금 개요

**개념** 공무원의 퇴직,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공무원 및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여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제도

**근거** 「공무원연금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적용대상**

-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매월 정액의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한시적 또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위원회 제외)
  - 기타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수행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여부 등을 참작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방의회의원 등), 공무원 임용전의 수습기간 및 기간제 교사 등은 적용 제외

☑ 재직기간

**기본재직기간**

-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계산(연월수(年月數)로 산정)
-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은 퇴직급여 등을 산정하는 요소이며, 가산기간은 본인이 재직 중 신청한 경우에만 재직기간으로 인정(퇴직 후 신청 불가)

**가산기간**

- 합산대상기간 :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  
군인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
- 산입대상기간 : 임용 전 병역복무기간
- 소급통산기간 : '18.9.21.현재 시간선택제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법 시행 이전 시간선택제로 근무한 기간 등

재직기간 상한

•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은 최고 36년(중전 33년)까지 인정  
- 법률 제13387호 개정(2016.1.1.시행)에 따라 법 개정 전(2015.12.31.)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단계적 연장(법률 제15523호, 2018.3.20. 부칙 제24조)

2015년말 재직기간	21년 이상	17년 이상 21년 미만	15년 이상 17년 미만	15년 미만
재직기간 상한	33년	34년	35년	36년

퇴직수당 산정시 재직기간

- 공무원연금법상 기본재직기간에 한해서 산정하고 휴직·직위해제·정직기간에 대해서는 1/2을 감축
-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 자녀의 양육 또는 여성공무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2007.1.19.이후) 등의 경우에는 감축기간에서 제외

☑ 지급요건 및 지급액

○ 퇴직급여

종류	지급요건	지급액
퇴직연금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후 연금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때	전 재직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 × 1.7% × 재직연수 × 재직기간별 기준소득월액에 적용하는 비율(이행률)
조기 퇴직연금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후 연금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연금지급개시연령 도달 전에 연금을 받고자 할 때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기준으로 미달연수 매1년당 5%씩 감액, 최대 5년까지 25% 감액하여 지급
퇴직연금 공제 일시금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후 10년을 초과하는 기간 중 일부기간을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때	퇴직연금 : 퇴직연금 계산식 동일 (공제기간 제외) 일시금 : 퇴직연금 일시금 계산식 동일 (공제기간)
퇴직연금 일시금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후 퇴직연수에 같음하여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때	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0.975 + 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5년 초과 재직연수 × 0.00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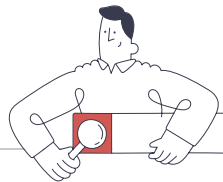
★ 국가공무원 인사제도 기초상식

종류	지급요건	지급액
퇴직 일시금	•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할 때	• 퇴직연금일시금 계산식과 동일

○ 퇴직수당

지급 대상	지 급 액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 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 6.5~39%

○ 시효 : 급여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 더 알고 싶다면?

📖 관련 법령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관련 웹주소

공무원연금공단(www.geps.or.kr)

📞 담당자 연락처 : 연금복지과 044-201-8415

16 후생복지

Q1 국가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국가공무원의 삶의 질과 사기를 제고하기 위해, 휴양·보건·안전 등 다양한 후생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및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국가공무원을 위한 후생복지 정책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책임보험 제도, 공무원 임대주택, 마음건강센터, 동호회 지원, 숙박시설 제휴, 연금대부, 퇴직지원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MZ세대 증가 등 환경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후생복지 제도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관별로 소속 직원들의 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신규직원 지원(웰컴박스, 멘토-멘티제도), 경조사 지원, 휴게공간 확충 등 자체적인 후생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2 국가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 맞춤형 복지점수는 기본적으로 400점씩 배정되며, 근무연수·부양가족 수에 따라 추가적으로 복지점수가 배정됩니다.(1점=1천원)

근속복지점수는 1년당 10점씩, 최대 300점까지 배정되며, 가족복지점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수에 따라 배정됩니다. 그리고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출산축하금, 난임지원비, 태아·산모검진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 100점, 직계존비속 1인당 50점. 단, 직계비속 중 둘째자녀는 100점, 셋째자녀부터는 1인당 200점
- ▶ 출산축하금 : 둘째자녀 2,000점, 셋째자녀 이상 3,000점
- ▶ 난임지원비 : 500점, 태아·산모검진비 : 1회당 100점, 총 2회 배정

**Q3** 복지포인트는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먼저 기관별로 가입한 단체보험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그 외 나머지 포인트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체보험에는 본인·배우자 생명/상해보험, 암·2대질병 진단비, 의료비 보장보험(실손보험) 등이 있습니다.

자율항목은 건강·여가·가정 등의 분야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비·현금성 상품권 등에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복지포인트는 '맞춤형복지포탈'에 본인 카드를 등록해두면, 3~7일 이내에 카드사용 내역 중 청구가능한 항목이 조회되어 자동으로 사용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맞춤형복지포탈 : www.gwp.or.kr

**Q4** 100세 시대인데, 공무원 퇴직 후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지원이 있나요?

퇴직 후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기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제2 인생설계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은퇴교육 등이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퇴직 경찰관이 금융기관 순찰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 및 은행직원·고객 대상 교육 활동을 하는 등 퇴직공무원에게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과 함께, 공직사회를 떠나는 공무원에게 경력설계, 재취업·창업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전직지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은퇴지원교육, 봉사단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퇴직공무원 종합포털(G-시니어)에서 퇴직공무원 지원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생복지

☑ 공무원 후생복지 제도

- (개요) 정부의 생산성 제고를 목적으로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제공되는 간접적인 물질·정신적 지원

후생복지서비스 공급 체계

공급주체	근거법령	재원	지원계획
인사혁신처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 국가(인사처 예산)	· 기본계획(5년 마다) 및 시행계획(매년)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연금법	· 공무원 연금기금	· 사업계획(매년)
중앙행정기관	· 국가공무원법	· 각 기관 예산	· 집행계획(매년)

☑ 맞춤형 복지제도

- (개요) 개별 부여된 복지점수 내에서 공무원이 본인 선호와 필요에 따라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05~)
- (복지점수 배정) 기본점수 + 변동점수(근속+가족+추가)

구분	배정 기준
기본점수	· 400점 일률 배정
변동 복지 점수	근속 · 근무연수 1년당 10점(최고 30년까지 최대 300점 배정)
	가족 · 배우자 포함 4인 이내, 자녀는 인원 수 관계없이 모두 배정 · 배우자 100점, 직계존·비속 등 1인당 50점 다만, 둘째 자녀는 100점,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200점
	추가 · (출산축하) 둘째 자녀 출산시 2,000점, 셋째 이상 출산 시 3,000점 · (난임지원) 모자보건법 난임지원 대상이 아닌 자에 대하여 500점 · (태아·산모검진 지원) 자녀 임신 시 2회 배정(200점, 20만원)

★ 국가공무원 인사제도 기초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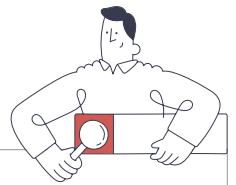
○ (복지항목 구성) 기본항목(필수/선택) + 자율항목

구분	내용	구성	
기본항목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 공무원 의무 선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 생명/상해보험</li> </ul>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영기관의 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 → 소속공무원 의무 선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우자 생명/상해보험, 암·2대 질병 진단비 등</li> </ul>
자율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영기관의 장이 필요에 따라 설정하면, 각 구성원이 자유롭게 선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li> </ul>	

☑ 퇴직공무원 지원 체계

단계	제도 및 프로그램	주요내용				
		퇴직예정	5~10년 이내	5년 이내	3년 이내	1년 이내
퇴직준비	은퇴지원교육(연금공단)	과정명(대면교육)	자기이해	미래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공헌</li> <li>· 재취업</li> <li>· 귀농귀촌</li> <li>· 창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가활용</li> <li>· 글쓰기</li> <li>· 귀농귀촌</li> </ul>
※ 온라인 상시학습과정 별도 운영(웰니스 라이프 등)						
퇴직전후	퇴직준비교육(각 부처 운영)	· 20년 이상 근속한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				
	전직지원 컨설팅(인사혁신처)	·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재취업 및 창업 등 지원				
퇴직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Know-how+)(인사혁신처)	· 퇴직공무원의 전문성을 국민안전, 사회통합·행정혁신, 경제활성화 등 공공분야에 활용				
	사회기여활동 지원사업(연금공단)	상록봉사단	· 상록봉사단(퇴직공무원의 자생·자율·자발적인 지역 사회 밀착형 봉사조직) 활동 지원			
		연금아카데미	· 퇴직공무원의 평생교육 지원, 퇴직 후 봉사활동 등과 연계			

단계	제도 및 프로그램	주요내용
퇴직후	G-시니어(연금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봉사, 교육, 재취업 등 다양한 퇴직 후 정보제공 및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li> </ul>
	퇴직공무원 지원센터(연금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공무원 대상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서울, 부산, 대전, 광주, 강원, 대구, 전북, 제주, 경인, 세종 등 10개소)</li> </ul>



**? 더 알고 싶다면?**

**📖 관련 법령**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 공무원연금법 제84조(퇴직공무원 사회기여활동 지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90조

**🌐 관련 웹주소**

맞춤형복지포털(www.gwp.or.kr)

**📞 담당자 연락처**

: 연금복지과 044-201-8423(맞춤형 복지제도)  
044-201-8414(퇴직지원제도)

## 17 재해보상

### Q1 '공무상 재해'란 무엇인가요?

공무상 재해는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 등을 하는 중 발생한 부상, 질병, 장애 및 사망을 말합니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이에 따른 치료·수술비, 재해유족연금 등을 지급하여 보상하고 있으며,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상추정제를 도입하는 등 공무상 재해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공무상 재해 예시

- 경찰공무원이 현행법 체포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여 입은 부상
- 소방공무원이 장기간 화재진압업무를 수행하며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 Q2 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같이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들은 인권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인만큼,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 및 그 유족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근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내용 : 직장 내 괴롭힘(공무원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공무상 재해로 봄

### Q3 공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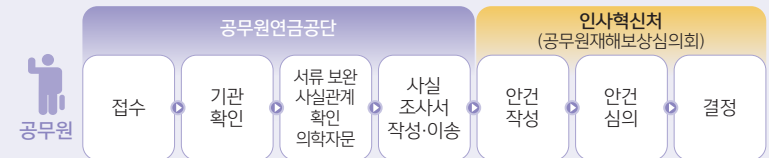
청구인이 소속기관의 확인을 받아 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www.geps.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청구인은 공무와 재해 간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공무수행 관련자료(근무상황부, 근무일지, 목격자 진술서 등) 및 진단서·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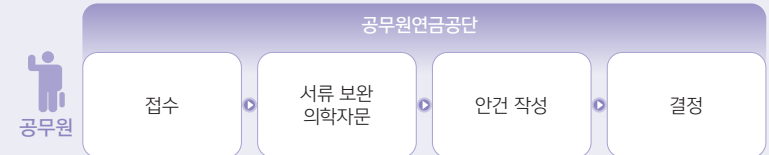
급여 종류에 따라 인사혁신처(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또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결정·지급합니다.

#### 급여 결정 절차

##### ☑ 요양급여, 장애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 ☑ 요양급여(명백한 부상의 경우 한정), 기간연장, 재활·간병·부조급여



**Q4**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비용은 얼마인가요?  
근무시간 외에도 이용할 수 있나요?

**☎**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의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되며, 평일 야간상담과 주말상담도 운영합니다.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는 전국 8개 정부청사(서울, 과천, 대전, 세종, 대구, 광주, 인천, 춘천)에 소재하고 있으며 전문 상담사가 진행하는 개인·집단상담, 진단 및 심리검사, 맞춤형 프로그램 등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상담) 개인·집단상담, 찾아가는 심리상담, 전문의 상담
- (진단 및 심리검사) 스트레스 검사, 종합 심리검사 등
- (단체프로그램)
  - (일반) 심리재해예방 프로그램, 개별 부서요청에 따른 기획프로그램 등
  - (맞춤형) 민원담당/ 고위험업무 수행자/공상·신임공무원 상담/ 긴급위기지원 등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는 공무원 및 그 가족, 순직 공무원의 유족을 대상으로 하며 상담은 대면/비대면(전화,이메일,화상)으로 가능합니다. 평일 야간상담 운영시간은 매주 월,수,금 20시까지이며, 주말 상담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합니다.

**☝** 제도 핵심내용

**☑** 공무원 재해보상

- (목적)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 등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 등을 통해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적용대상) 공무원(단,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제외)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청원산림직원법」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 (근거법령) 공무원 재해보상법(2018.3.20.제정) 등
- (인정범위)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  
※ 고의·사적행위 등으로 인한 부상·질병 등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불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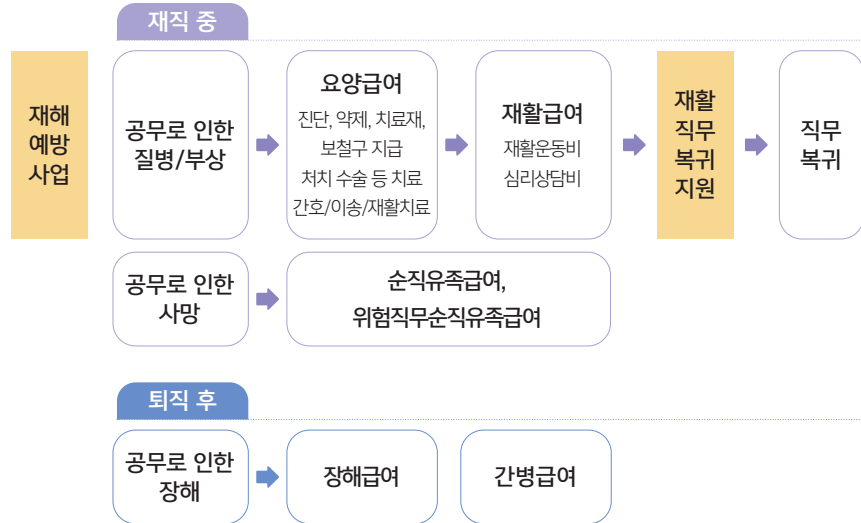
**세부 인정범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 공무상 부상
  -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 공무상 질병
  -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 또는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 등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인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



★ 국가공무원 인사제도 기초상식

- (보상체계) ① 공무원 재해에 대한 예방, ② 보상(요양·재활·유족·장해·간병급여), ③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 더 알고 싶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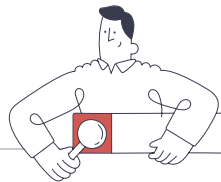
📖 관련 법령

·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 관련 웹주소

공무원연금공단(www.geps.or.kr) 내 종합재해보상포탈

📞 담당자 연락처 :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 044-201-8135, 8237



# Ⅶ

## 복무·윤리

- ★ 복무
- ★ 공직윤리

공무원의 연가는 며칠인가요?  
9급 공무원도 재산을 등록해야 하나요?



18 복무

Q1 공무원의 연가는 며칠인가요?

1개월 이상 재직할 때부터 11일의 연가가 부여되며, 재직기간이 늘어날수록 연가일수도 늘어납니다.

※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1년 이상 2년 미만	12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2년 이상 3년 미만	14일	6년 이상	21일
3년 이상 4년 미만	15일		

Q2 공무원 특별휴가 종류가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은 휴가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 특별휴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구분	실시요건	휴가일수
경조사휴가	본인결혼(5일), 배우자출산(10일), 부모·배우자사망(5일), 입양(20일) 등	1~20일
출산휴가	출산 전·후를 통하여 부여(출산 후 45일 이상)	90일 (다태아 120일)
유산·사산휴가	유산·사산 직전 임신기간에 따라 부여 ※ 남성공무원 3일	10일~90일
난임치료시술휴가	난임치료시술별 2~4일 ※ 남성공무원 정자채취일 1일	2~4일
여성보건휴가	생리기간 중 휴식 사유(무급)	매월 1일

구분	실시요건	휴가일수
임신검진휴가	임신기간 내 임신검진 사유	최대 10일
수업휴가	한국방송통신대 출석수업 참석 공무원	연가일수 초과 출석수업기간
모성보호시간	임신한 여성 공무원	매일 2시간
육아시간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	매일 2시간 (총 24개월)
재해구조휴가	재해 공무원과 재해지역 자원봉사 공무원	5일 이내 (대규모재난시 10일이내)
가족돌봄휴가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10일 (유급 2~3일)
포상휴가	탁월한 성과 및 공로가 인정된 공무원	10일 이내
심리안정휴가	위험직무 수행 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사고로 인하여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4일 이내

Q3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다만, 직무 특성상 상시근무체제 유지 등이 필요할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일·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경찰·소방, 방호원 등 상시근무체제가 필요한 경우 등

또한,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공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연근무 사용이 가능합니다.

**Q4** 코로나 이후 유연근무가 각광받고 있는데 공무원도 이러한 근무를 활용할 수 있나요?

☎ 공무원도 효율적 업무수행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서장의 승인하에 유연근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는 크게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탄력근무제(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선택형, 집약근무형)와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원격근무제(재택근무형, 스마트워크근무형)가 있습니다.

유형		내 용
탄력 근무제	시차 출퇴근형	1일 8시간 근무하면서, 출·퇴근시간 자율 조정
	근무시간 선택형	1일 근무시간(4~12시간)을 조정하되, 주 5일 근무 유지(주 40시간 근무)
	집약 근무형	1일 근무시간(4~12시간)을 조정하여, 주 3.5일~4일 근무(주 40시간 근무)
원격 근무제	재택 근무형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근무
	스마트워크 근무형	자택 인근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사무실 근무

**Q5** 해외 대사관 휴일의 경우 우리나라의 공휴일과 그 나라의 휴일을 모두 적용해서 쉬나요?

☎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주재국의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본다.

1. (생략)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3.~11. (생략)

**Q5** 출장을 신청한 시간보다 일정이 일찍 끝나는 경우 사무실에 꼭 복귀해야 하나요?

☎ 출장 종료 시 사무실로 복귀하여야 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에 따라 출장공무원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도 핵심내용**

국가공무원 의무 및 금지사항

○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의무 및 금지사항을 준수해야함

**8대 의무 및 4대 금지사항**

구분	내 용	근거 법령
8대 의무사항	① 선서의 의무 • 공무원은 취임할 때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	「국가공무원법」 제55조
	② 성실의 의무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	「국가공무원법」 제56조
	③ 복종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수행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	「국가공무원법」 제57조

★ 국가공무원 인사제도 기초상식

구분	내용	근거 법령
8대 의무사항	④ 친절 공정의 의무 •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 공정히 직무	「국가공무원법」 제59조
	⑤ 종교 중립의 의무 •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2
	⑥ 비밀 엄수의 의무 •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	「국가공무원법」 제60조
	⑦ 청렴의 의무 • 직무와 관련해 직·간접적 사례·증여 또는 향응 수수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61조
	⑧ 품위 유지의 의무 •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4대 금지사항	① 직장 이탈 금지 •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함	「국가공무원법」 제58조
	②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 영리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64조
	③ 정치 운동의 금지 • 정당·정치단체의 결성 관여 및 가입금지, 특정정당·특정인 지지·반대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④ 집단 행위의 금지 • 노동운동이나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 휴가제도

- 휴가는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서,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가 있음

구분	개 념
연 가	•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휴가
병 가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용하는 휴가로 연간 60일 (공무상 병가는 180일)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공 가	•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경우 부여받는 휴가로 투표참가, 건강검진, 헌혈 등에 사용
특별휴가	•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로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유사산휴가 등

☑ 근무시간

- (근무시간)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오전 9시~오후 6시)
- (유연근무)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유연근무 신청 가능
- (현업공무원) 경찰·소방 등 업무 특성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근무일과 근무시간 변경 가능

☑ 출장

-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해서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됨
- 출장공무원은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는 지체없이 결과 보고

☑ 공휴일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휴일의 적용을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국가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공휴일을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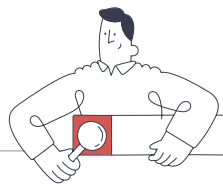
- **일요일(52일)**
- **일요일 이외 일반 공휴일(15일)** : 1.1, 설날 연휴(3일), 3·1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 추석 연휴(3일), 개천절, 한글날, 기독탄신일  
\*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며, 주 40시간 근무제로 인한 휴무일임(공무원 복무규정)
- **대체공휴일(13일)** : 설·추석연휴(6일)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3·1절,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7일)이 토·공휴일과 겹칠 경우

❓ 더 알고 싶다면?

📖 관련 법령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공휴일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담당자 연락처 : 복무과 044-201-8436, 8445, 8446



19 공직윤리

Q1 9급 공무원도 재산을 등록해야 하나요?

🗣️ 일반적으로 9급 공무원은 재산등록을 하지 않으나,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거나 해당 업무 관련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9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산을 등록해야 합니다.

정부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등록의무자는 정무직,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감사·회계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입니다. 다만, 부동산과 관련한 이해충돌 예방을 위해 '21년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무원의 경우 전 직급이 재산등록의무자로 추가되었습니다.


Q2 등록된 재산 모두가 심사 대상인지, 아니면 수상한 정황이 있을 경우에만 심사되나요? 또, 만약 재산심사과정에서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처벌할 수 있나요?

🗣️ 등록된 재산은 모두 재산심사 대상입니다.

재산심사 결과 등록재산 거짓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 등을 취득한 사실이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 의결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만약,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으면,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 국세청장, 관세청장,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대상자가 적절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Q3** 주식백지신탁이 무엇인가요? 어느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의 공·사익 충돌 방지를 위해 1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수탁기관에 백지신탁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주식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은 각급 기관 감사담당관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직무관련성 심사결정은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Q4** 공무원 퇴직 후 재취업할 경우 항상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  ① 취업심사대상자인 퇴직공직자가 ②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③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심사대상자가 아닌 퇴직공직자,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에 취업예정인 퇴직공직자 등 취업심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취업심사 없이 취업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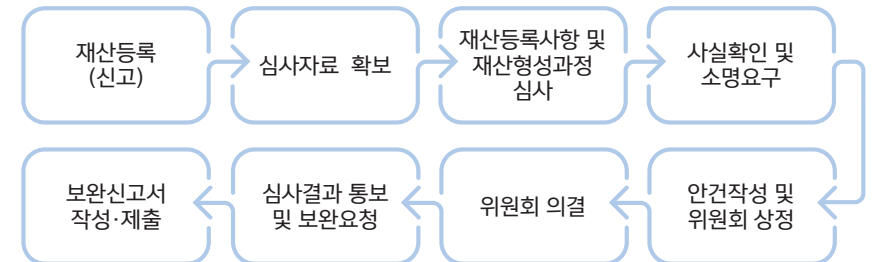
**제도 핵심내용**

**☑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제도**

- **(재산등록)** 부정한 재산증식 사전 예방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유관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이 재산등록 대상
- **(재산심사)** 성실 등록 여부 및 재산형성 과정을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허위등록 사실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법 제8조의2제2항) 등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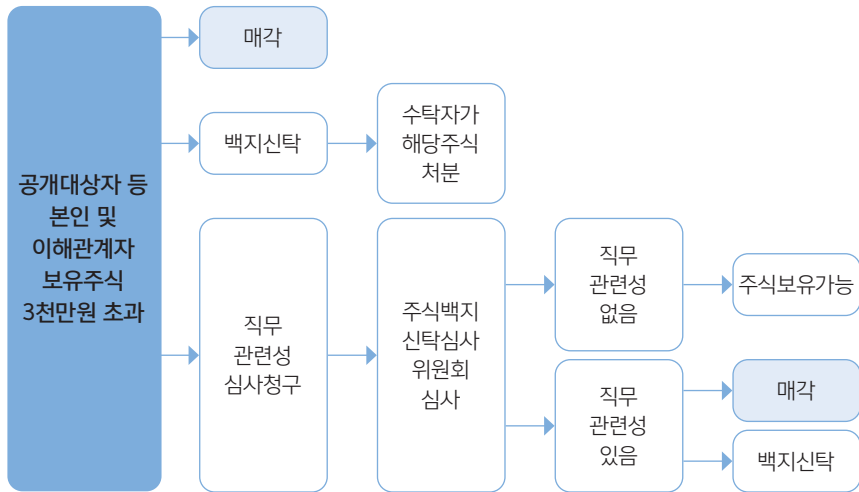
**참고 I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과정**



**☑ 주식백지신탁 제도**

-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익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
  - 재산공개대상자(1급 이상) 등 공무원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보유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이를 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아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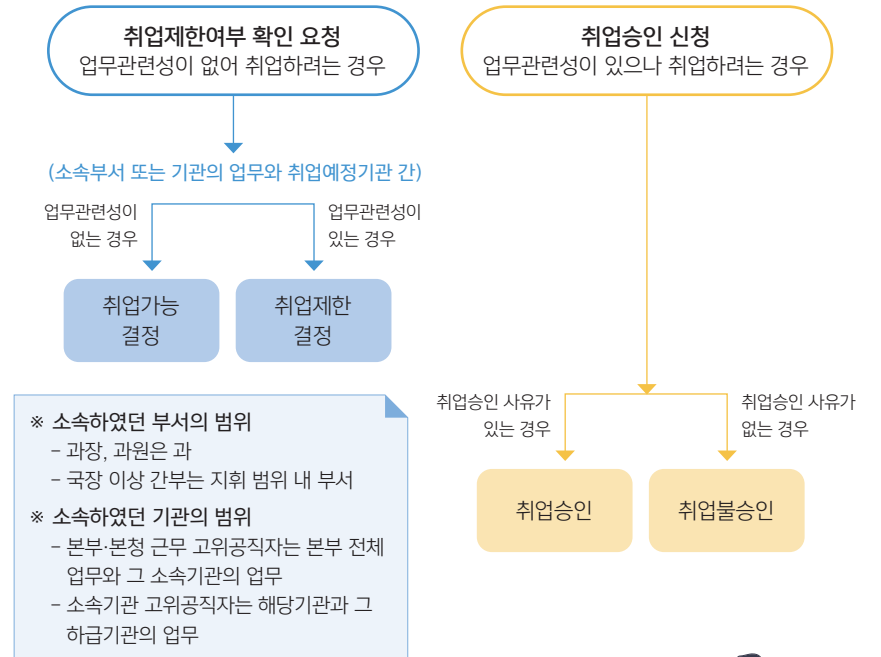
참고 | 주식백지신탁 업무 과정



☑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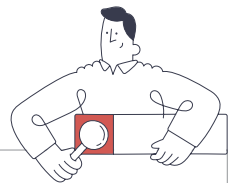
- **(취업제한)**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 또는 승인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
- **(행위제한)** 모든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할 수 없고(법 제17조제2항) 퇴직 전 소속기관 공무원과 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됨
  - \* 다만,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급 가능

참고 | 취업 심사 업무 과정



? 더 알고 싶다면?

- 📖 **관련 법령**  
·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시행규칙
- 🌐 **관련 웹주소**  
공직윤리시스템 (www.peti.go.kr)
- 📞 **담당자 연락처** : 윤리정책과 044-201-8452, 8456  
재산심사기획과 044-201-8463  
재산심사관리과 044-201-8567  
취업심사과 044-201-8475



# VIII

## 징계·소청

- ★ 징계
- ★ 소청 및 고충처리



징계받은 이력은 영구적으로 남는 건가요?  
고충 상담을 하고 싶은데 비밀 유지가 될까요?

### 20 징계

#### Q1 징계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공무원 신분에서 배제되는 ‘파면’과 ‘해임’, 직급을 내리는 ‘강등’, 일정기간 직무에서 배제하는 ‘정직’, 일정기간 보수를 감하는 ‘감봉’,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는 ‘견책’이 있습니다.

‘파면’의 경우 5년간, ‘해임’의 경우 3년간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없고, 다른 징계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동안 승진과 승급이 제한됩니다.

파면	• 공직 배제 • 퇴직급여 1/2* 및 퇴직수당 1/2감액	• 5년간 공직 재임용 제한
해임	• 공직 배제 • 금품비위는 퇴직급여 1/4** 및 퇴직수당 1/4 감액	• 3년간 공직 재임용 제한
강등	• 1계급 내림 + 정직3월 • 승진·승급제한(3월+18월)	• 처분기간 중 보수전액 감액
정직	• 처분기간(1~3월) 중 직무종사못함 • 승진·승급제한(정직기간+18월)	• 처분기간 중 보수전액 감액
감봉	• 처분기간(1~3월) 중 보수1/3 감액	• 승진·승급제한(감봉기간+12월)
견책	• 승진·승급제한(6월)	

\*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은 퇴직급여 1/4 감액(퇴직수당 감액은 동일)

\*\*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은 퇴직급여 1/8 감액(퇴직수당 감액은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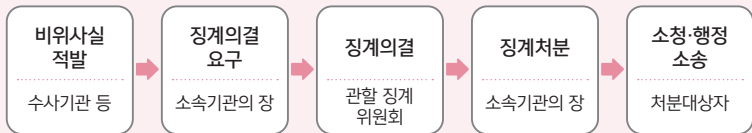
#### Q2 고의가 아닌 실수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징계를 받나요?

☞ 가벼운 과실로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으나, 징계양정은 고의성 여부, 과실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한 때, 그리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Q3** 징계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소속 기관장이 조사를 거쳐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징계를 의결하면 기관장 등 처분권자가 징계처분을 하게 됩니다.



해당 공무원은 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소명을 할 수 있고, 징계의결이 요구된 후에는 징계위원회에 의견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와 과실의 경중, 그 밖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 의결을 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장은 의결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면 징계처분을 하기 전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징계받은 이력은 영구적으로 남는 건가요?

파면과 해임을 받은 이력은 영구적으로 남습니다. 다만 그 외의 징계는 일정기간 근무하는 경우 말소 처리를 하여 징계에 따른 불이익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징계처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말소제한기간	9년	7년	5년	3년

\* 근거 :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

말소 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말소 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난 후에 말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 핵심내용

☑ 징계제도

- (징계개념)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무원 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과하는 행정상 제재
- (징계대상) 경력직공무원(일반직, 특정직), 별정직공무원
- (법적근거)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
- (징계종류)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 (징계효력) 신분상 효력 및 보수상 효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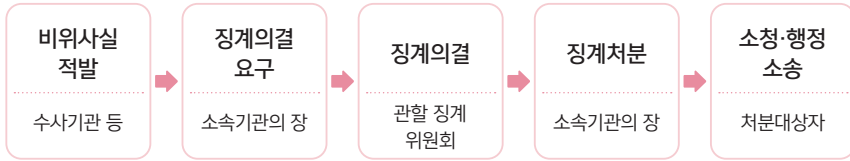
구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신분상 효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직 배제</li> <li>• 5년간 공직 재임용 제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직 배제</li> <li>• 3년간 공직 재임용 제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계급 내림 +정직3월</li> <li>• 승진제한 (3월+18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분기간 중 직무중사 못함</li> <li>• 승진제한 (정직기간 +18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진제한 (감봉기간 +12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진제한 (6월)</li> </ul>
보수상 효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급여 1/2* 및 퇴직수당 1/2감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품비위는 퇴직급여 1/4** 및 퇴직수당 1/4 감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월간 보수 전액 감액</li> <li>• 승급제한 (3월+18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분기간 중 보수전액 감액</li> <li>• 승급제한 (정직기간 +18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수1/3 감액</li> <li>• 승급제한 (감봉기간 +12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급제한 (6월)</li> </ul>

\*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은 퇴직급여 1/4 감액(퇴직수당 감액은 동일)

\*\*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은 퇴직급여 1/8 감액(퇴직수당 감액은 동일)

국가공무원 인사제도 기초상식

✓ 징계 관련 절차



✓ 징계위원회 종류 및 관할

종류	중앙징계위원회	보통징계위원회
관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급 이상 공무원 징계사건</li> <li>(본부) 6급 이하 공무원 중징계사건</li> <li>* 공사급 이상 외무공무원,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소방준감 이상 소방공무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급 이하 공무원 징계사건</li> <li>* 소속기관 6급 이하 중징계사건은 중앙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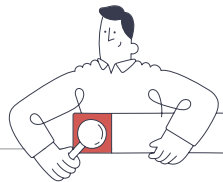
※ 법관, 검사, 경찰, 소방, 교원, 군인 등 특정직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로 설치된 징계위원회를 구성·운영

더 알고 싶다면?

관련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10장(징계)
-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담당자 연락처 : 복무과 044-201-8434



21 소청 및 고충처리

Q1 징계 등을 받은 공무원이 억울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어디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경찰 및 소방공무원은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공무원은 해당 시·도에 설치된 지방소청심사위원회나 각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교원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소청심사기관

구분	소청심사기관	
	일반직	특정직
국가공무원	외무공무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원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군인	군인소청심사위원회 등
지방공무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소속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등
	교육청 소속(일반직)	지방소청심사위원회(각 시·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각 시·도 교육청)

Q2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소청을 제기하고 소청심사를 하는 동안 징계가 보류되나요?

소청을 제기했다고 해서 징계처분의 효력이 중단되거나 보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소속 징계처분권자(인사권자)에게 명령한 경우에는 징계처분권자(인사권자)가 취소 또는 변경 인사명령을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Q3** 소청사건에 대한 심사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소청심사위원이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내용과 사건 당사자가 진술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과 제도 등을 제대로 적용하여 적정하게 징계하였는지와 유사 소청 사례, 정상참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청 사건을 결정할 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로 결정합니다.(다만, 중징계의 경우는 출석위원 2/3 이상 합의)

**Q4** 고충 상담을 하고 싶은데 비밀 유지가 될까요?

☎ 고충 사건에 대한 비밀은 견고하게 보장됩니다.

공무원 고충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심사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6조에서 고충을 청구한 공무원이 제출한 자료 등은 본인 동의없이 공개할 수 없고, 고충심사나 상담 등에 참여한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비밀유지 의무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충심사나 상담 관련 비밀을 누설하면 그 공무원은 징계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함

또한, 고충심사 문서는 비공개 문서로 지정하고,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기관에 송부하는 등 업무 관련자 외에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도 핵심내용**

☑ 소청심사 업무 흐름도 (처분→소청→행정소송)



※ 중앙고충심사도 소청심사와 유사하게 심사 진행

# IX

## 공무원 노사협력

★ 공무원 노사협력



### ? 더 알고 싶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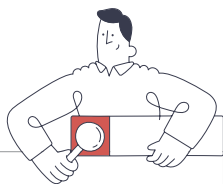
#### 📖 관련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 소청절차규정, 소청업무처리지침,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 🌐 관련 웹주소

소청심사위원회(www.sochung.go.kr)

📞 담당자 연락처 :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 044-201-8650(소청)  
044-201-8604(고충)



## 22 공무원 노사협력

## Q1 공무원도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수 있나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고용부)에 따라 공무원도 노동조합 설립과 조합 활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총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거나 인사·보수, 기관의 조직·정원 관리 업무 등 행정기관의 업무 또는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업무, 교정·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은 노조 가입이 제한됩니다.

※ 공무원노조 최소 설립 단위 및 가입 범위

- 설립단위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행정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 단위로 설립
- 가입범위 :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별정직공무원, 퇴직공무원은 노조가입 가능

## Q2 공무원노조가 원하는 사항은 무엇이든 교섭할 수 있는 건가요?

공무원노조는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각각의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할 수 있습니다.

단,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항은 교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구체적인 비교섭대상(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쟁송(불복신청 포함)에 관한 사항
-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

## Q3 공무원 직장협의회와 노동조합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설립 단위와 구속력 있는 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행안부)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기관장이 4급 이상인 기관 단위로 설립되는 노사협의 제도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노조법」(고용부)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여 근무조건을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체로 헌법기관, 행정부, 자치단체 및 교육청을 최소 단위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직장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고용부)상 노사협의회와 유사하며 협의권이 인정되고, 공무원노조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해 정부교섭대표와 단체협약을 체결합니다.

기관 단위로 설립되는 직장협의회는 특성상 기관 내부의 현안사항에 중점을 두고 협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논의가 가능하며, 기관의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공무원노조와 차별화됩니다.

구분	직장협의회	공무원노동조합
설립단위	기관장이 4급 이상인 기관 단위로 설립	최소설립단위* * 헌법기관, 행정부, 시·도, 시·군·구, 시·도교육청
협의/교섭주체	협의회와 소속기관장	노조와 정부교섭대표* * 행정부의 경우 인사혁신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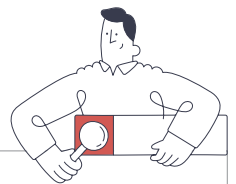
## 제도 핵심내용

**☑ 공무원 단체교섭 절차** \*「2020 정부교섭」 합의 절차 기준(예시)

**? 더 알고 싶다면?**
**☞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노동조합의 설립), 제6조(가입범위), 제8조(교섭 및 체결권한 등)

☎ **담당자 연락처** : 노사협력담당관실 044-201-8084



국가공무원 인사제도 기초상식  
**장관은 1급 공무원인가요?**

---

발 행 일 2023. 9.  
발 행 처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담당관  
기획제작 디자인크레파스  
02-2267-0663

---

이 책의 저작권은 인사혁신처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인사혁신처의 허락 없이는 무단으로 싣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